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연구책임자 | 이금순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론	1
II. 국경이동의 배경분석	7
1. 국경이동의 주요 요인	9
2.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동기 및 규모	19
3. 일반 사례와 북한과의 비교	43
III.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현지 체류실태	47
1. 체류유형	49
2. 인신매매	54
3. 노동유형	66
4. 단속유형	69
5. 제3국으로의 재이동	85
IV. 강제송환 절차 및 처벌	91
1. 강제송환 이후 주요 조사내용	93
2. 처벌절차 및 주요내용	96
3. 시기별 변화 분석	104
V.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보호방안	113
1. 난민보호 차원	115
2. 불법이주자보호 차원	120

VI. 결 론	125
참고문헌	129
최근 발간자료 안내	135

표 목 차

<표 II-1> 배급중단 시점	20
<표 II-2> 식량상황이 가장 어려운 지역	21
<표 II-3>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출신지역별 분포	21
<표 II-4> 배급중단 후 생계수단	22
<표 II-5> 탈북동기별 현황	27
<표 III-1>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체류기반 (1998~1999)	50
<표 III-2>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성별 구성 (1998~1999)	51
<표 III-3>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연령별 비율 (1998~1999)	51
<표 III-4> 재외 체류시절 생활환경	53
<표 III-5> 인신매매관련 처벌기록	65
<표 III-6>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생활유형 (1998~1999)	68
<표 III-7> 체포지역 및 강제송환 빈도	76
<표 III-8> 체포장소 및 경위	79
<표 III-9> 체포이후 중국 내 구금실태	83
<표 III-10> 제3국 경유국가와 조력자	87
<표 III-11> 입국과정의 소요비용과 수령자	88
<표 III-12> 브로커에 대한 인식	89

<표 IV-1> 송환이후 처벌내용 97
<표 IV-2> 강제송환된 임신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102

I

서론

일반적으로 북한주민들의 탈북현상은 단순한 국경이동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즉 이제까지는 주로 북한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왔기 때문에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현상은 다른 지역과는 차별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국경을 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발적인 귀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중국 등 제3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접근도 대부분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상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2003년부터 세 차례 연속 채택된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 결의안 및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등도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의 국경이동은 기타 지역과 비교할 때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다. 냉전시기에는 동북아 지역 내 일반주민들의 국경이동이 매우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탈 냉전이후 지역 국가 간의 관계 정상화와 함께 경제교류가 확대되면서 인구이동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북아 지역국가들은 대부분 출입국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이동의 규모는 아직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동북아 지역 내 국경이동 중 최근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부각되어 온 것이 북한주민들의 이동이다.

사회주의권 붕괴와 함께 1990년대 초반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북한주민들의 국경이동은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주민들의 주요한 생존수단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국경이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현지 체류방식 다양화, 제3국으로의 재이동, 관련국의 정책변화 등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국경이동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여 왔다.

본 연구는 북한주민들의 국경이동을 기타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일반적인 국경이동과 북한주민의 국경이동의 요인과 배경을 비교하며 살펴보고, 이를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경이동은 난민(refugee), 국외실향유민(externally displaced), 불법이주자(illegal migrant) 등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이 위 범주들의 개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검토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주민이 국경을 이동하는 요인(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국경이동에 관계된 중개자 여부, 국경이동으로 인한 처벌 양태, 현지국에서의 체류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제까지 재외 체류 북한주민문제는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라는 관점에서 조명되었으며, 여러 가지 사안 중 인신매매, 임금착취, 불법체류 단속 및 강제송환과정 등을 중심으로 논의 되어 왔다.

기존의 ‘탈북자’ 연구는 이들의 규모나 체류형태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하며 사안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특정사례를 중심으로 단편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는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세부 사안별로 보여 지는 변화 양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 기 발표된 중국 내 탈북자들의 면담자료, 관련 단체의 실태보고서 및 연구자의 연구논문, 필자의 국내입국 북한주민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안들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인의 면담은 북한주민의 입국초기에 이루어졌으며, 증언자의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신상자료는 밝히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주로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체류기간 생활, 단속, 강제송환이후의 처벌절차 및 내용을 중심으로 개별 심층면접이 이루어졌다. 개별 면접은 2005년 입국자

까지를 포함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5년 입국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수집한 개별 면접의 규모는 135건으로, 전체 입국자의 규모를 볼 때 이들 사례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계량분석을 통해 전체 상황에 대한 대표성을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각 사안에 대한 계량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본인의 면접문항과 구체성이 시기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례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주민의 국경이동관련 환경변화를 가져오게 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탈북자’문제를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재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국경이동의 배경분석

1. 국경이동의 주요 요인

개인은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 내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주거지를 이동하게 된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된 체제 하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적의 생활환경을 찾아 이동하여 왔다. 개인의 거주지역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도 보다 나은 거주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경제적·정치적 이주의 시기별 변화를 보면, 첫 번째 단계는 16~18세기 유럽, 두 번째 단계로는 18세기 후반으로 유럽의 산업화, 민주화 및 인구혁명이 급속하게 전개된 시기이다. 마지막은 19세기 말로 규정되고 있다.¹

15세기 강력한 유럽국가의 등장 즉 유럽인의 신대륙 정복은 인간 이주사에서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소위 신대륙으로의 국제적인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럽 내의 체류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20세기 이전까지는 ‘난민’의 개념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다. 대개 ‘난민’으로 규정되는 개인들의 국제적 이동의 자유가 크게 훼손을 당하게 된 것은 20세기 초부터 서방국가들이 도구주의적 이민정책 (instrumentalist immigration policy)을 채택하면서 부터이다. 이는 당시 소수의 경제, 기술, 군사적인 면에서 강국인 국가와 다수의 빈곤국들 간의 간격이 크게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부유한 강대국들이 국경관리를 강화하게 된 배경에는 통신수단의 발달로 정보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해 개인의 기동성도 크게 증대되게 되

¹ Aristide Zolberg · Jennifer Hyndman, *Managing Displacement: Refugees and the Politics of Humanitarianis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 6.

었다. 이에 따라 부국들은 다수의 가난한 이방인들이 밀려들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보다 엄격한 국경통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난민보호관련 지역협약과 국제의정서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제법상 주요단위인 동시에 실행주체라는 점이 부각되어 왔다. 현재의 망명제도는 2차 대전 중 유민들의 정치적 분포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즉 대부분의 국가는 강제이주자들을 견제하고, 망명을 허용하지 않는 전략을 지속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국가 간 국경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즉 유민들이 국적국 및 상주체류국의 국경을 벗어나야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국경을 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2차 대전이후 유럽의 유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난민협약과 의정서들이 채택되었으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설립과 함께 난민보호 활동이 개별국가를 넘어선 국제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왔다. 탈냉전과 함께 국제적 보호대상이 급증함에 따라 서방국가들의 난민보호 역할은 점차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유민들의 국경이동 이후 난민으로서 보호하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활동이 유민들이 자국이나 체류국을 떠나지 않고 국경내부에 머무르는 단계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찾기 위한 이주의 폭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² 또한 지역단위 경제통합 등과 함께 지역 내 인구이동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보다 나은 생활기반을 찾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인구이동은 국

² IOM · ICMPD, *New Challenges for Migration Poli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Vienna: ICMPD Press, 2004).

경을 넘어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국경을 넘어서 인구의 이동의 경우에는 관련국가의 법적 허가가 전제되어야 하며, 엄격한 출입국 관리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국가 간의 정보교류 및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노동력의 이동도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개인들의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찾기 위한 노력에는 국경도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장애로 남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 내에서의 이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국경이동(border crossing)은 이동의 동기와 환경에 따라 강제적 이동(forced migration)과 자발적 이동(voluntary migration), 또 국경이동의 법적 절차 준수여부에 따라 합법적인 이동과 비합법적 이동, 시간적으로는 영구적 이동과 일시적 이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동자의 의지에 따른 분류로 강제 이동과 자발적인 이동 간의 구분은 명확히 규정짓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특정지역 및 국가의 환경이 체류주민들의 생존환경을 위협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 이들의 이동을 강제하는 무력수단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인 경우에는 강제적 이동(impelled migration)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강제이동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국경이동이 아닌 불법적 이동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경이동은 한 국가 내의 지역이동과는 달리 관련국들에게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국가 간의 주요한 정치적인 사안이 될 수 있다. 국경이동의 요인은 국적국 혹은 영주 체류국의 거주여건이 적절하지 않아 발생하는 배출요인(push factor)과 이동 현지국의 거주여

건이 국적국 혹은 영주 체류국보다 좋아서 생겨나는 유인요인(pull factor)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주로 직업이나 소득 면에서 이득을 얻기 위한 경제적 요인과 문화시설, 교육, 종교 등 보다 좋은 환경을 찾아 이동하는 문화적 요인, 분쟁이나 정치적 탄압에 의한 정치적 요인 등이 있다. 이러한 불법 국경이동의 배출 및 유인요인들은 실제로 매우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특정요소와 다른 요소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개인의 불법 국경이동을 지속시켜 가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비합법적인 국경이동(illegal migration)을 중심으로 이동의 형태 및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배출요인(push factor)

(1) 분쟁 및 정치적 혼란

특정국가에 내전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정치적 보복이나 살상을 피하고자 하는 절박한 인도적 위기상황으로 규정될 수 있다.³ 다수의 지역에서 분쟁의 원인이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민족 혹은 종교적 집단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분쟁은 적대적 집단에 대한 대량 살상을 의미하게 된다. 이로 인해 분쟁지역에서는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국외실향유민(externally displace persons)은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분

³ 이러한 경우에는 국경을 넘지 않고 이루어지는 대규모 인구이동도 발생하고 있다. Roberta Cohen · Francis M. Deng, *Masses in Flight: The Global Crisis of Internal Displacement*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88).

쟁발생 인접국 국경지역에 ‘난민수용시설’(refugee camp)이 설치되게 된다. 개인의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을 중심으로 한 난민보호활동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난민보호 조치가 분쟁 종족간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분쟁의 불씨를 계속 살려나감으로써 오히려 대량살상의 단초가 되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전쟁의 종식과 함께 대량의 난민들이 자유주의 국가로 이동하는 양태를 보였다. 사회주의권 붕괴와 함께 지역 분쟁이 본격화 되었고, 이들 지역에서도 대규모의 국민들이 서방자유주의 국가로 이주하게 되었다.

(2) 처벌의 위협

개인은 국적국 혹은 체류국에서의 범죄로 인해 ‘형사소추’의 위협이 있는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국경이동을 선택하게 된다. 여기서 보통범죄에 의한 형사처벌과 정치적 처벌 즉 ‘박해’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소가 박해가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국의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법이 일반적인 인권기준과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법적용이 실제 차별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치적 내용을 담은 유인물의 배포를 ‘공공질서’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단순범죄에 대한 처벌형식으로 개인에 대한 정치적 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박해’로 규정될 수 있다.⁴

또한 일반범죄에 대한 처벌의 경우에도, 개인의 사회적 혹은 정치적 신분에 따라 예상되는 형벌의 정도가 크게 차이 날 수 있는 사회

⁴ UNHCR, 장복희 역, 『난민관련 국제조약집』 (1997).

의 경우에는 차별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불법 국경이동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3) 구조적인 차별 및 박해

국경이동의 한 원인으로 개인의 종교,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위치로 인해 겪는 구조적인 차별을 들 수 있다. 특정 국가 내 다양한 집단에 대한 대우 상 차이는 실제로 많은 사회에서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적 조치가 특정집단의 생활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즉 생계를 유지할 권리, 자신의 종교를 신봉할 권리, 또는 일반적으로 유용한 교육시설을 이용할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할 경우에는 박해로 규정될 수 있다. 또한 차별적인 조치가 중대한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차별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장래생존에 관해 위기감과 불안감을 준다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상당한 공포’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차별조치 자체가 박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주변 정황과 관련피해자들의 실제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인 차별을 피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경우에는 ‘난민’에 해당될 수 있다.

(4) 경제적 빈곤

국경이동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는 경제적인 동기이다. 즉 개인이 절대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빈곤상황 혹은 인접국과 비교하여 열악한 경제여건에 놓여 있는 경우 새로운 생존의 방식으로 국경이동을 택하게 된다.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생

존방식을 모색한 이후, 국경이동을 택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자신이 체류하는 체류국에서 보다 나은 취업기회를 찾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거나, 장사 등 새로운 경제활동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체류국 내에서의 경제적 활동이 개인의 경제적 빈곤을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자산을 처분하고 국경을 넘어 유민으로 전락하거나, 인접국 등 다른 국가에서 불법노동자로 생활하고자 시도하게 된다. 특히 지역 내 국가 간의 경제여건이 현격하게 다른 경우, 국경이동을 통한 보다 나은 소득창출의 욕구가 매우 크게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경제적 동기의 국경이동의 경우에는 가족단위로 이주하기 보다는, 가족 구성원 중 취업능력이 가장 뛰어난 개인이 단독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취업능력은 이동국의 경제활동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농업관련 계절노동자의 경우에는 남성 세대주가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가정부 및 유흥업 등 비공식부문의 노동자로는 여성 특히 미혼여성이 이동하게 된다.

(5) 가족 해체

본인의 국적국 혹은 영주체류국에 가족구성원들이 모두 생활하고 있는 경우 새로운 지역으로의 단독 영구이주를 택하는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없거나, 가족이 해체된 경우에는 보다 용이하게 불법 국경이주를 선택하게 된다.

가족단위의 불법 국경 이동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부담이 뒤따르게 된다. 즉 가족단위의 안정적인 체류기반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또한 새로운 이주지역에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력을 확보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극빈자의 경우와는 달리,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보유한 경

우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확보하여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착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는 합법적인 이주의 방식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가족구성원 중 일부가 불법이동을 통해 생활기반을 마련한 후 남은 가족구성원들이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이주의 방식을 찾게 된다. 가족단위 이동에서 가장 현실적인 이동요인으로는 자녀들의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장래에 대한 희망이 불투명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혹은 가족구성원 중 일부의 제3국에서의 불법체류가 단기간이 아닌 장기화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 결합 혹은 더 나은 가족단위의 생활환경을 위해 국경을 넘게 된다.

나. 유인요인(pull factor)

(1) 신변안전 확보

체류국의 분쟁 및 정치적 박해로 인해 국경이동을 선택하게 되는 가장 절박한 이유는 자유와 신체적 안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법국경이동은 관련국들 간의 출입국협정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불법이주의 경우 적발될 경우 출입국 위반조치에 의해 강제추방의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동국에서의 신변안전 확보가능성과 영주권 취득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경우에는 국경이동을 보다 증대시키게 된다.⁵ 예를 들어 불법 신분증을 매입하는 것도 신변안전 확보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지 국민과

⁵ T.Alexander Aleinikoff · Douglas Klusmeyer, eds., *From Migrants to Citizens*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00).

의 결혼을 통한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의 가능성도 매우 중요한 유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체류기반 접근가능성

국경이동을 유인하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이동국에서 체류기반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불법 국경이동 이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 및 동일 민족 등 우호적인 사회집단이 체류국에 존재하는가 여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본인들이 사용하던 모국어로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초기 이주과정에서 신변보호와 함께 취업 이전까지 최소한의 생존기반을 제공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지국의 언어 습득이 이루어지면, 체류기반을 확보할 가능성도 그만큼 증대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체류기반으로는 사실혼관계와 같이 성을 매개로 한 관계를 확보하는 것이다.

(3) 취업기회 확보

불법이동을 유인하는 경제적인 요인으로는, 비공식적 부문을 포함하여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서도 접근이 가능한 취업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이다. 국가 간의 임금 차이 및 인구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해 값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큰 경우에는 불법이주자들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사적인 영역 혹은 비공식부문의 경우에는 불법노동력의 고용 수요가 매우 높다. 즉 가정부 혹은 간병인 등은 주요 근로공간이 개인가정이라는 점에서 단속의 위험도 다른 직종에 비해 줄어들게 된다. 또한 특정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변

화도 이러한 사적 공간에서 불법 노동자의 수요를 창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여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상 비용이 지급되는 경우,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도 증대되게 된다.⁶ 또한 매춘 등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업종의 경우에도 불법이주자들의 중요한 취업 기반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国籍국이나 영주체류국이 아닌 제3국에서의 취업은 관련법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여행 허가 사증 등 취업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이 제한되게 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여행자들이 불법적으로 취업하여 경제활동에 종사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단속되면 추방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는 값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불법 국경이동이 지속되어 왔다.

(4) 교육기회 확대

불법국경이동으로 인한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이주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즉 본인의 교육기회 혹은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이를 기반으로 체류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열려있는 경우 불법이동을 유인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불법이주자의 경우 법적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공립 교육에 대한 접근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국가의 경우에는 불법이주자의 최소한의 인권보호차원에서 초등교육을 비롯한 교육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즉 본인의 불

⁶ IOM·ICMPD, *New Challenges for Migration Poli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Vienna: ICMPD, 2002).

법적 체류신분을 이유로 교육권을 박탈하지는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혹은 불법이주자로서 공립 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고비용을 지불하고 사립 교육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2.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동기 및 규모

가. 국경이동의 동기

북한주민들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이동하거나 러시아 내 별목장 및 건설현장을 이탈하여 왔다. 북한주민의 가장 유력한 탈출지인 중국·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입장을 존중하여 상호인도협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을 북한당국에 송환하여 왔다. 이와 같이 탈북 이후 신변위협과 강제송환 시 처벌의 위험 및 북한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탈북현상이 지속되어 온 배경을 내부적 배출요인(push factor)과 외부적 유인요인(pull factor)으로 나누어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탈북을 초래한 북한의 내부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배출요인

(가) 식량난으로 인한 생존위협

1990년대 이후 계속된 북한의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1995~1997년 수해와 가뭄으로 가중된 식량난이 주민들의 국경이동을 증가시켜 왔다. 북한의 중앙배급체계가 기능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주민들은 식량 및 생필품 배급과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북한의 식량난이 점차 악

회됨에 따라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었고 유엔 등을 통한 인도적 지원이 지속되어 왔으나, 북한 내 운송수단의 미비 및 분배의 투명성 부재로 인해 북동부 지역 등 일부지역에서는 대규모의 아사자가 발생하였다.

좋은벗들이 1998년 12월 발표한 북한 식량난민 1,694명 면담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난은 북한이 수해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1995년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발생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아래의 <표 II-1>에서와 같이 정기적인 배급이 중단된 시점을 일부지역 출신은 1992년 이전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함경남도의 경우 1994년에 중단되었다는 응답이 대다수이고, 함경북도 및 기타지역에서는 1994년과 1995년에 정기적인 배급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II-1> 배급중단 시점

배급중단연도	인원수 (명)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유효백분율
1992년 이전	137	13.4%	14.5%	14.5%
1993년	136	13.3%	14.4%	28.9%
1994년	329	32.3%	34.9%	63.8%
1995년	287	28.2%	30.4%	94.2%
1996년 이후	55	5.4%	5.8%	100.0%
무응답	75	7.4%	-	-
합 계	1,019	100.0%	100.0%	-

출처: 좋은벗들, “북한 식량난민 1,694명 면담조사 결과 보고서” (1998. 12).

따라서 초기 식량난이 가장 심각했던 지역은 함경남도의 대도시 지역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표 II-2>에서와 같이 국경을 넘는 북한주민들의 식량난에 대한 평가에서도 함경남도지역이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현지에서 면담에 응한 북한주민의 출신지역은 59.6%가 함경북도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함경남도의 비율(20.0%)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초기 탈북의 주요 요인은 식량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존위협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표 II-2> 식량상황이 가장 어려운 지역

(복수응답)

지역	함경북도	함경남도	기타지역	비슷하다	합계
응답수	186	423	165	122	896
응답비율	20.8%	47.2%	18.4%	13.6%	100.0%
인원비율	25.0%	56.9%	22.2%	16.4%	120.6%

출처: 좋은벗들, “북한 식량난민 1,694명 면담조사 결과 보고서” (1998. 12).

<표 II-3>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출신지역별 분포

거주지역	인원수(명)	백분율
함경북도	1,009	59.6%
함경남도	338	20.0%
자강도	32	1.9%
량강도	56	3.3%
평안북도	34	2.0%
평안남도	52	3.1%
평양시	10	0.6%
남포시	12	0.7%
황해북도	20	1.2%
황해남도	57	3.4%
강원도	74	4.4%
합계	1,694	100.0%

출처: 좋은벗들, “북한 식량난민 1,694명 면담조사 결과 보고서” (1998. 12).

<표 II-4> 배급중단 후 생계수단

(복수응답)

배급중단 후 생활	응답 수	인원빈도	응답빈도
나무, 산나물, 옷 등으로 장사했다	458	49.3%	25.4%
풀뿌리, 버 뿌리, 소나무껍질을 먹음	397	42.7%	22.0%
가구, 집기를 팔아서	371	39.9%	20.6%
친지의 도움을 받았다	187	20.1%	10.4%
땀기밭을 일구어서	71	7.6%	3.9%
도둑질	67	7.2%	3.7%
식량을 구하러 다른 지역을 다님	53	5.7%	2.9%
집을 팔아서	52	5.6%	2.9%
구 걸	48	5.2%	2.7%
약초를 캐어서 식량과 바꾸어 먹음	28	3.0%	1.6%
하루벌이를 했다	10	1.1%	0.6%
기 타	62	6.7%	3.4%
합 계	1,804	194.2%	100.0%

출처: 좋은벗들, “북한 식량난민 1,694명 면담조사 결과 보고서” (1998. 12).

1998년 좋은벗들의 조사결과에서 보여 지듯이, 북한주민들은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내부에서의 다양한 생존수단을 찾게 된다. 유민발생의 초기 정보체계에서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가구, 집기, 집을 팔거나 하는 것도 북한주민들의 생존방식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내부적인 수단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아사위험이 있는 본인과 가족들의 생존방법을 찾아서, 혹은 병든 가족의 치료약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게 된다. 배급중단이후 생계수단을 지역별로 보면, 함경북도의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 친지의 도움을 받았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국경인접 주민들의 경우 중국에 거주하는 친척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단기 국경이동의 경우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상대적 박탈감 심화

경제난·식량난의 악화 속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한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이 국경이동을 촉진시켜 왔다. 1990년대 초기에는 조선족 보파리장수와 해외교포들의 북한 방문, 해외유학생 및 해외파견자들의 북한 귀환 등을 통해 북한주민들은 외부정보를 접하게 되었으나, 소수의 주민들에게 한정되었다. 그러나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식량이나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탈북 하였다가 귀환한 주민들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들의 중국 내 체류경험이 주요한 탈북촉진 역할을 하여 왔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왕래하면서 들은 소식들을 가까운 사람에게는 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발전상은 북한주민들에게 체제비교의 인식을 심어 주고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외부정보의 유입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는 국경이동에 대한 욕구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식량난으로 인해 배급이 중단되자 장마당이 북한주민들의 주요한 생활터전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장마당의 장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게 되며, 북한 지역을 이동하면서 장사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나누게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⁷

일부 북한주민들은 중국 및 남한의 발전상을 알고 있으며, 남한방송을 비밀리에 청취하는 주민들의 수도 증가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국경지역뿐만 아니라 평양이나 함흥 등 일부지역의 고층아파트에서 KBS 위성방송 등을 수신한 경험이 있는 새터민들의 증언이 수집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한국 비디오를 시청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드라마를 통해 한국사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대된 것으

⁷ 좋은 벗들, “제19차 중국 접경지역 답사 보고서,” 중국 길림성 연길시, 북중 접경지역(두만강변), 1999년 12월.

로 증언하고 있다. 또한 방송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주민들에 대한 정책이나 생활상이 소개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막연하나마 남한의 발전상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국경이동 북한주민중 남한 입국 규모가 증가하면서, 남한에 입국한 가족이 중국의 친척이나 중개인을 통해 북한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무선전화를 들여 보내는 경우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 가족이 중국이나 남한 가족과 직접 통화하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 받게 된다. 중개인이 직접 북한국경지역을 방문하여 남한이나 중국에 있는 가족들의 소식을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범죄에 대한 처벌 위협

북한 내 사회기강 해이와 사회일탈현상의 증가는 탈북현상을 촉진시켜 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돈이면 최고”라는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관이 북한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사적인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뇌물수수, 경제범죄 등이 일상화되었다. 1990년대 초 까지는 해외체류자 및 근로자들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탈출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경제난으로 인한 해외공관의 자금난과 공관원들의 궁핍한 생활, 마약 등의 밀수·밀매 및 위조미화의 제작·유통, 공관 내 조직원들의 갈등 증폭 및 상호감시·밀고,

강제송환 등은 공무원들의 탈북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외화벌이사업 중 한국 상사원이나 선교사들과 접촉한 경우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 탈북을 시도하게 되었다. 북한당국은 해외체류자 중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소환 및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1990년대 중반 식량난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범죄율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전기줄을 절도하여 중국에 동을 밀매한 경우나 소를 절도한 경우에는 국가자산을 절도한 것으로 규정하여, 공개처형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양곡절도와 기업소의 기계장비 등을 밀매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였다. 장마당을 통한 사적 경제활동과 기업소 단위에서 불법적인 경제활동이 확산되면서, 반사회주의적 행동이 발각되어 처벌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탈북을 감행하게 된다. 즉 골동품이나 마약을 밀매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혹은 중국에서 음란 비디오 등을 반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혹은 본인이나 가족의 불법 탈북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경우 탈북을 감행하게 된다.

(라) 탈북자에 대한 처벌과 편견

탈북이 급증하고 국제사회의 탈북자 인권침해에 대한 압력에 대응하여 북한당국의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면서, 재탈북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송환된 탈북자들을 초기에는 정치범으로 간주하여 정치범수용소에 특별관리하고, 가족들을 통제구역으로 강제이주 조치하였다. 그러나 국경을 넘는 북한주민의 수가 급증하자 도강 이후 체류기간과 동기에 따라 처벌강도를 달리하여 왔

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변방에서 국경지역 사회안전보위부로 강제송환되면, 탈북기간동안 남한사람 또는 기독교인과의 접촉여부, 남한입국 시도여부, 인신매매 연루 등을 조사 받게 된다. 이러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치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외의 ‘단순도강자’는 도집결소로 이송되어 추가 조사를 거쳐 출신지역(군단위)의 사회안전부에 연락하여 인계해가도록 한다. 그리고 대부분 노동단련대에서 6개월 이하의 노동교양을 받은 후 석방된다. 이와 같이 ‘탈북(도강)’에 대한 처벌이 이전보다는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수색과 구타⁸ 등으로 심각한 모욕감을 느끼고 재탈북을 결심하게 된다. 탈북하여 중국 등에서 생활하면서 상대적으로 나은 생활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처벌과정에서 불결한 위생상태 및 영양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탈북자에 대한 처벌과 편견으로 더 이상 북한 내에서는 장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탈북을 감행하게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마) 더 나은 생활환경에 대한 기대

1998년 이후 북한의 식량난이 고비를 넘긴 것으로 평가되며, 그 결과 이전처럼 단순히 절박한 생존형의 탈북 보다는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국경을 건너면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

⁸ 탈북자에 대한 구타는 보위부나 사회안전원 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수감되어 있는 일반범죄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 여성 새터민의 경우는 심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간에 취침도중 같은 호실에 있는 수감자들을 모두 깨운 뒤 집단심문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대로 응답하지 않아 자신들의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몇 시간동안 집단구타를 당하여, 온 몸에서 피가 흐르고 얼굴이 부어올랐던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새터민 김○○, 하나원 분원에서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5월 17일.

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돈을 벌어 장사밑천을 마련하여 귀환하거나, 중국에서 취업하여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탈북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⁹ 국경을 넘는 것도 이전과는 달리 국경을 넘어가는 사람을 매개로 넘겨주는 사람과 중국에서 받는 사람, 그리고 이를 소극적 묵인 또는 적극적으로 안내해주는 국경경비대 간에 물질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점차 전문화, 조직화, 체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⁰ 이들은 이전 탈북경험을 통해 중국 및 남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계획 하에 가족들이 연차적으로 남한으로 오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표 II-5> 탈북동기별 현황 (2004년 6월말 현재)

(단위: 명)

구 분	생활고	처벌 우려	체제 불만	동반 탈북	중국 정착	가정 불화	기타	계
2000	127	66	52	51	13	2	1	312
2001	293	73	33	171	7	2	4	583
2002	606	93	96	259	37	39	9	1,139
2003	774	80	123	194	46	53	11	1,281
2004. 6	463	44	63	148	2	39	1	760
계	2,263	356	367	823	105	135	26	4,075

출처: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

⁹ 좋은벗들은 최근 탈북의 유형을 단순생존형 월경자보다는 생계유지형 월경자들로 변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전문 보파리 장사, 밀수,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사람 등 뚜렷한 목적을 갖고 강을 넘는(‘강타기’)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돈이 있어야 안전하게 강을 넘을 수 있다.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2004. 10. 6).

¹⁰ 위의 글.

(2) 유인 요인

국경이동을 유인하는 외부적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조선족사회의 보호 및 지원

북한주민들이 국경이동을 새로운 생존방식으로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동북삼성을 기반으로 한 조선족 사회의 보호와 지원에 기인한다. 중국 조선족 사회는 매우 강한 민족의식과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문화혁명기에 개인적으로 북한사회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경험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에 친척을 두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기 탈북사태가 발생하던 1990년대 중반에는 탈북주민에 대해 매우 동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식량난 초기 도강자들에게 개인적인 차원으로 혹은 지역단위에서 상당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의 종교단체 및 개인들의 간접적 지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¹¹ 즉 조선족 교회를 중심으로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의 보호활동이 이루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북한주민을 돕는 일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탈북현상이 장기화되면서 탈북자관련 절도, 강도, 살인, 인신매매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중국 중앙당국의 처벌압력도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의 보호에 상당부분 장애가 되기 시작하였다.

¹¹ 한국의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비밀리에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의 선교 및 보호활동을 하던 단체들은 현지 조선족들의 도움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로 확대될 수 있었다. 일부단체들은 현지 기업을 설립하여, 조선족의 사회복지사업과 국경이동 북한주민 보호사업을 병행하고자 하였다.

중국에서 북한주민들을 숨겨주거나 밥을 주고 도와주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한 규모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초기에는 대부분의 조선족들은 북한주민들을 외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급속한 증가로 조선족들의 보호능력이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다. 중국의 경제난과 한국의 경제난 등으로 연변지역 실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북한주민들의 지나친 유입으로 사회문제화 됨으로써 조선족들의 보호의지도 점점 약화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¹²

북한주민들로부터 사기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 반면, 북한주민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정부는 북한주민의 밀출입국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중국형법 제318조와 제321조에 근거하여 처벌하여 왔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 중앙당국의 처벌압력은 북한주민들의 중국 내 보호활동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주민들의 보호 및 국내입국과 관련하여 중국 내 수감된 보호자의 대부분이 국내입국탈북자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의 보호관련 활동의 위험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현지 보호자에 대해 활동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경제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이 따르지 않는다면 현지인의 보호 활동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¹² 조선족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식을 갖고 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모두 우리의 조국이다. 연변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 조선족은 2가지 정체성을 가진 해외교포들이다. 교포는 어느 나라에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한민족이지만 중국국민이다. 그러므로 조선족들의 경제형편이 향상되지 못하고 탈북자들이 계속 증가한다면 우리 조선족들만의 힘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민간단체의 구호활동

국경을 넘은 북한주민을 돕는 국내 민간단체의 활동은 주로 구호활동을 통한 생존권 보장과 인권침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려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경이동 북한주민을 돕는 민간단체들은 대부분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사업을 병행하면서,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에 대해 의식주 해결을 위한 생계비 지원, 은신처 제공, 특수한 경우에는 국내 입국 추진 등 생존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주로 기독교 단체들이 이러한 보호사업을 담당하여 왔으며, 교단 혹은 개별교회 차원에서도 은밀하게 추진하여 왔다.

기독교내 국경이동 북한주민 보호활동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여 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은 장기체류자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첫째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중국 조선족 처소(지하)교회와 신자들의 가정에 단기적으로 은신처를 마련하고, 식량과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여 안전한 내지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기본적으로 선교적 차원의 지원으로 국경이동 북한주민중 기독교 신자이거나 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자’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다.¹³ 이 경우에는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이 북한으로 자발적으로 귀환하여 선교활동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생명줄운동은 조선족 교회를 중심으로 ‘고아학교’를 운영하면서 탈북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의식주 제공, 중국어 교육, 성경공

¹³ 한기총은 사역자교육을 위해 동북3성 등지에 ‘미션 홈’(mission home)을 마련하고 탈북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여 성경공부와 신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체류를 위해 중국관리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중국 공민증을 발급받기도 한다. 탈북동포 미션홈 1,000교회 결연운동 한기총 내부분서, 조서영, 「재외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NGOs 활동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7), p. 60에서 재인용.

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경지대에서 조선족 신자를 통해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에게 의약품, 쌀 등을 지급하며, 은신처를 제공하기 힘든 성인 탈북자가 교회를 찾아올 경우 1인당 약5일분의 여비를 지원하였다.

좋은벗들(구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은 일정정도의 생필품과 현금을 지원하고, 부정기적이기는 하지만 국경지역에서 의료활동을 실시하여 왔다. 이 단체의 경우에는 북한의 식량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중국내 북한주민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중국내 북한주민에 대한 구호활동을 전개하였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1997년 발생한 탈북자 국제미아사건 당시 탈북자들의 국내입국을 위한 여건 조성활동에 관여한 바 있다.¹⁴ 중국정부의 단속 강화와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증가로 조선족 사회가 갖는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국경이동 북한주민에 대한 국내 민간단체의 구호활동은 굶주림을 피해 탈출한 북한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였다. 국경이동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활동은 생계지원비, 은신처 마련비, 활동가의 활동비, 실태조사비, 중국관리들의 묵인을 위해 드는 비용, 벌금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금 및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종교단체들이 주를 이루어졌다.¹⁵

국경이동 북한주민에 대한 민간단체의 보호활동의 하나로 실시되어 온 것은 이들의 인권을 국제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난민지위 부여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주로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좋은벗들, 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¹⁴ 1997년 통일강령이회 소속 김재오 선교사가 북한주민 13명을 보호하다 사건이 벌어지자 천주교측에 협조를 구해 김수환추기경이 국내입국 지원에 참여하였다.

¹⁵ 기독교 단체들은 현지에 파견된 선교사를 통해 현지상황을 파악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불법입국자로 간주되는 북한주민들이 난민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방지되고 침해당하는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국제홍보활동을 위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¹⁶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관련국, 국제기구 및 인권단체들에게 보호를 호소하여 왔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경우에는 국경이동 북한주민은 형법 제47조에 의해 정치적 처벌을 받게 되는 ‘정치난민’으로 규정하고, 정치범수용소내의 인권침해 등을 주요 사안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 단체는 북한 전체주의 사회를 지속시킬 우려가 있는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식량지원시 북한당국에 인권문제를 조건부로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⁷ 시민연합은 러시아내 북한주민에 대한 소액 생계비 지원을 실시하기도 하나, 주로 인권침해 사례수집과 국제여론화를 위한 연대활동¹⁸에 역점을 두어 왔다.

좋은벗들은 ‘탈북자’ 발생배경을 사회구조적 모순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으로 야기된 식량난으로 규정하고, 탈북자들을 절대적 생존위기와 아사 직전에 탈출한 ‘식량난민’으로 개념화하여 왔다. 이 단체는 탈북자 1,694명과의 면담을 통한 북한의 식량난 실태조사를 근거로 북한주민 350만 명 이상이 아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중국 동북3성 2,479개 마을 현지조사를 통해 탈북자의 규모와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여 국제사회에 실상을 알리고 보호를 위한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좋은벗들은 국경이동 북한주민에 대해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대

¹⁶ 불법체류자인 국경이동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중국에 의해 간첩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위의 글, p. 64.

¹⁷ 『조선일보』, 1999년 4월 15일.

¹⁸ 시민연합은 미국 방위포럼, 일본 북조선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 북한민중구조 긴급행동네트워크, 프랑스 대북성명서 발표 지식인 그룹, 해외의 각 인권연구소와 연대하고 있다.

규모의 대북원조¹⁹를 통해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미국의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관련국 정부 등에게 제안하고 있다.

1999년 7월 탈북난민유엔청원운동본부는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부여를 촉구하는 1,000만인 서명운동을 기점으로 국제홍보활동을 개시하여, 10월 서울 NGO대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국제인권단체들에게 알리고자 주력하고 탈북난민보호국제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이 단체는 실제 현장에서 탈북자를 보호하고 지원한 경험이 없이 국제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탈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종교단체들은 북한주민들의 국경이동이 급증함에 따라 국경이동 북한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실시하면서 이들을 통한 북한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현지 선교사 대부분은 개인적 차원에서 개별 교회와 연결되어 제한적인 재정지원을 받기도 하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기독교 보수교단 연합체가 현지선교사들과 제휴하여 ‘탈북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동북3성에 미션홈(고아원, 애육원, 처소교회, 가정교회, 산간의 움막 포함)을 설치·운영하거나, 고아원이나 애육원을 개설하여 중국인 또는 조선족 고아나 사생아 외에 비공식적으로 북한어린이를 수용·보호하면서 초보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중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는 국경이동 북한주민에 대한 연민의 감정으로 지원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으나, 응급조치성의 보호만으로 국경이동 북한주민이 안고 있는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

¹⁹ 국제사회의 무조건적인 인도적 대북 원조,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일본의 전쟁배상금 지급, 북·미, 북·일 국교정상화를 촉구하였다.

밖에 없었다. 또한 개별 선교사들은 ‘위장 탈북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2001년 이후 중국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의 보호활동을 하던 다수의 국내 민간단체들은 현장인력의 추방조치 등으로 인해 중국현지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중국에서의 보호 및 지원활동은 초기와 비교할 때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체의 활동내역도 보다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특징은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의 국내입국을 매개하는 일부단체 및 개인들의 활동이 주요한 국경이동 북한주민 보호사업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다) 취업기회

북한주민들이 국경이동을 생존의 수단으로 택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취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주민들은 인력이 부족한 중국의 농촌지역에서 저임금의 노동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북한주민들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발각되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나, 동시에 이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빌미로 노동착취 등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남성의 경우에는 강제단속의 위험이 낮은 농촌지역의 과수원, 양 목장 등에서 일하다가, 일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고 장기체류로 신변에 대한 위협에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면, 도시지역 공장 노동자로서 취업기회를 찾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의 경우에는 식당 및 유흥업소 봉사원, 저임금의 간병인, 가정부로서의 취업기회를 갖게 되었다. 탈북사태 초기에는 북한주민들이 현지어인 중국어에 익숙하지 않고, 외관상으로도 쉽게 외지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취업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장기화되어 현지 적응이 이루어지고 중국어에도 익숙해지면서,

식당이나 다방 혹은 노래방 등에서 일하게 된다. 또한 조선족으로 위장할 수 있을 만큼의 언어능력과 외모를 갖추게 되면서, 임금수준도 초기보다는 높아지게 된다.

한 북한주민(30대 남성, 청진출신)은 1999년 1차 탈북하여 도강장면을 목격한 조선족이 자신집으로 안내하여, 모내기일을 도와주며 5일간 체류하다가 국경지역이니 위험하다는 이웃 조선족의 권유에 동의하여, 길림성 안도현의 조선족이 운영하는 과수원 노동자로 7개월 체류하였다. 이후 이웃에 사는 탈북남성의 권유로 돈화시에 셋집을 구한 후 인근 거실바닥재 공장 노동자로 6개월간 일하였으나, 월급을 지불하지 않아 사직하였다 다시 국수공장에서 취업하였다가, 전에 일하던 목재공장장이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다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 농사일을 거들며 생활하게 되었다.²⁰

(라) 여성에 대한 수요 증대

탈북여성들의 국경이동을 유인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중국남성들의 동거상대로 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여성들이 나은 취업을 위해 대도시 및 한국 등 해외로 이주해 가면서 농촌지역의 남성들은 배우지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성적 대상으로서 북한여성에 대한 수요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조선족 남성의 경우에는 탈북 미혼 여성과 언어소통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들이 적절한 신부감이 될

²⁰ 본 북한주민은 4차례 송환에도 불구하고, 5차례 국경이동을 감행하였으며, 도강 시에는 매 번 같은 지역 농촌의 촌장집에 들러 농사일을 도우며 잠시 체류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주벽 혹은 도박벽 등으로 인해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중국남성들은 상대여성을 찾지 못해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탈북여성들을 맞게 되면 여성들이 동거생활에 불만족을 하여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상대 남성과 가족들이 북한 여성에 대한 폭행이나 성적 학대를 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도 중국 내 체류기간이 길어지거나 강제송환이후 재탈북하게 되면, 이전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대자를 선택하기도 한다. 즉 성적 관계를 매개로 중국 내에서 체류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용이하게 은신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탈북여성과 중국남성이 배우자 관계를 형성 하는 데는 법적인 요건들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결혼관계는 별다른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탈북여성의 연령대도 10대에서부터 60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대와 30대의 여성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 동북삼성지역에서 기혼여성들이 취업을 위해 한국으로 단기 이주한 경우에는 이들의 배우자들이 탈북여성과 동거하는 경우들도 상당수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 가족결합

북한주민들의 국경이동을 유인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중국이나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들과의 결합을 위한 것이다. 중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한 것으로는 가족 구성원들이 중국으로 이동하여 각자의 생계기반을 갖고 있다가, 이들 중 일부가 강제송

환 되면 다시 재탈북을 감행하게 된다. 또한 탈북여성들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동거하던 중국남성 혹은 이러한 동거기간에 출생한 자녀를 만나기 위해 다시 국경이동을 감행하게 된다. 법적으로 이들은 가족 관계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나, 실질적인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보다 더 강력한 유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의에 의한 결혼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사실 혼관계에서 자녀와 배우자를 두고 있어 강제송환이후에 재탈북을 감행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당국은 탈북여성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면 이들의 재탈북을 막기 위해 임신여부를 조사하고, 출신지역으로 넘기기 전에 강제유산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탈북이 장기화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가정생활을 꾸려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제송환 되더라도 위험을 각오하고 재탈북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미 탈북하여 중국, 남한 등에서 체류기반을 마련한 가족들의 도움으로 탈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귀환보다는 남한입국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다.

최근 남한입국자중 가족단위 비율이 증가하는 것에서 보여 지듯이 먼저 입국한 탈북자들이 정착금과 기타 소득을 활용하여 가족들의 국경이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상당부분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 탈북주민들은 자신들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 중국이나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신변확인을 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과의 연락통로가 다양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가족들의 입국방안을 모색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1993년 이후 입국한 2,510명 탈북자의 설문조사결과 응답자 780명중 대다수(90.1%)가 가족들의 입국을 위해 정착금과 기타 수입을 활용할 의사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¹ 일부 탈북자들은 직접 중국에 가서 가족들의 입국방안을 모색하거나, 심지어 북한을 다녀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2004년 한 북한주민은 1998년 탈북해 중국공안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다 2002년 11월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 진입에 성공, 2003년 1월 국내에 들어왔으며 이후 동생을 만나러 재입북하다 북한 국경경비대에 붙잡혀 남한 내 정착지원시설 등에 대해 진술하고 교육을 받은 뒤 2004년 5월 남한에 재입국한 후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으로 입국하여 가족을 만나고 대남 비방활동을 하다 재탈북하여 남한으로 재입국한 사례들의 경우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남북교류법 위반 혹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바) 한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한국정부의 탈북자 보호 및 정착지원정책이 북한주민의 국경이동을 유도하는 주요 요인으로 기능하여 왔다. 한국정부는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주민이 해외공관을 포함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반인도적 범죄자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보호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북한주민들이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 정부는 이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착금 및 임대주택 지급, 교육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적용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보호, 사회적응교육, 취업교육, 취업보호 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조선족, 현지체류 남한 기업인 및 개

²¹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3).

인, KBS 사회교육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확산되면서, 실질적으로 탈북자들의 남한 입국 선택에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들이 탈북초기에는 북한사회에서 교육받은 남한사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두려움으로 남한입국을 염두에 두지 않았으나, 중국 조선족 사회의 한국 밀입국 시도 등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서 한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또한 2001년부터 탈북자들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나 외교공관, 국제학교 등으로 진입하는 사건들이 방송에 보도되면서, 중국 내 체류 중이던 탈북자들이 동일한 시도를 모색하고자 결심하게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한국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될 정착금을 담보로 밀입국주선조직들을 활용하여 남한 입국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나.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규모

국경을 넘은 북한주민들은 대부분 신분상 불안으로 인해 은신해 있거나, 일정한 주거지 없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규모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제까지 정확한 공식 집계보다는 현장의 상황을 토대로 한 추산이 발표되어 왔으며, 정부 관계자와 민간 단체 실무자의 추정치 간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 북한주민들의 탈북이 지리적으로 비교적 용이한 이동경로인 두만강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러시아지역 등 합법적인 해외근무중 작업장을 이탈하는 경우²²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1990년대 말 전체 탈북자에 대한 규모를 추산하는 과정에서 주로 중국지역의 탈북자

²² 당시 러시아내 체류중인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규모는 약 200~300명 선으로 추정되었다. 『북한인권백서 1999』 (서울: 통일연구원, 1999), p. 138.

규모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중국에서 국경이동 북한주민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활동가 및 관련 연구자들은 중국 내 탈북자의 수를 약 10만~40만 명으로 추정하였다.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의 상황을 알리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체계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다. 1999년 8월 30일 사단법인 좋은벗들이 현장활동을 토대로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수가 3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였다.²³ 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탈북난민보호국제협의회)는 1999년 10월 2일부터 11월 12일 까지 5개조사반이 1,383명의 탈북자를 직접면담하여 「중국내 탈북난민 현장보고서」²⁴를 발표하고, 탈북자의 규모를 10만~20만 명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미국의 비영리 인권단체인 난민위원회(USCR)는 「세계 난민보고서」에서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가 5만명, 북한출신 유랑민이 10만명 정도라고 밝혔다.²⁵ 2003년 6월 루드 루버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HR)은 중국지역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를 10만 여명으로 추정하여 제시하였다.²⁶

북한의 식량난이 국제사회의 지원 등으로 완화되면서 새로운 탈북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동시에 중국과 북한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탈북자의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탈북주민의 규모가 3만~10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²⁷ 민주노동당

²³ 좋은벗들은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 기자회견을 실시하면서 단행본(『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을 발간하고, 비디오영상물도 직접 제작하여 발표하였다.

²⁴ 면담한 탈북자중 88.2%(1,283명)가 북한으로 귀환할 의사가 없으며, 탈북자중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도 77%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1999년 11월 21일.

²⁵ 『중앙일보』, 2001년 6월 27일.

²⁶ 『조선일보』, 2003년 6월 20일, A20.

²⁷ 박상봉, “중국내 탈북자 현황, 정책 및 전망,” 『새로운 차원에 접어든 북한난민 문제

은 2004년 중국 현지조사를 통해 2000년 이후 탈북자의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 3만 명 이하가 체류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²⁸ 중국인권연구협회 사무총장인 양첩밍도 중국 내 탈북자 규모가 3만 명 선일 것으로 추정하였다.²⁹ 중국 군사과학원 왕이성은 탈북자는 5만 명 이하이며, 그 중 많은 수가 수차례 월경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3만에서 4만 명 선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평가하였다.³⁰

2005년 2월 미 국무부는 탈북자의 규모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절정에 달했었으며, 2000년 경에는 7만 5천 명~12만 5천 명 선으로 추산되었다고 밝혔다.³¹ 좋은 벗들이 2005년 6~7월 중국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탈북자 규모(3만~5만 명)는 미 국무부의 탈북자 규모추정을 재확인하였다.³² 1990년대 후반에는 탈북자들이 주로 동북삼성지역의 조선족 거주지역에 밀집되어 있었으나, 중국 측의 단속이 강화되고 탈북자들의 현지어 습득이 이루어짐에 따라 한족마을 및 대도시 빈민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중국체류 탈북자의 규모가 급감한 이유는 국경경비와 단속 강화, 북한내 식

의 해결과 접근』(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3), p. 46. Refugee International은 중국 현장방문조사를 바탕으로 6만~10만 명 정도의 탈북자가 중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추산하였다. Joel Charny,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the Current Situation and Strategies for Protection,” *Testimony to the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November 4, 2003.

²⁸ 최규엽,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움』(2004. 12. 1). 2003년의 경우 중국정부차원에서 북한으로 8,000명을 귀국시켰으며, 현재의 탈북문제는 북한에 있는 주민을 빼내는 식의 기획탈북으로 소수라는 주장을 하였다.

²⁹ 양첩밍, “중국의 탈북자문제와 해결책,”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움』(2004. 12. 1), p. 77.

³⁰ Wang Yisheng, “Perspectives on ‘North Korean Escapees’ in China,” *Human Security in Northeast Asia: focusing on North Korean Migration into and through China*, Conference Program, January 6, 2004.

³¹ US State Department, *The Status of North Korean Asylum Seekers and the USG Policy Toward Them*, February 16, 2005.

³² 『연합뉴스』, 2005년 8월 21일.

량사정 완화 및 탈북비용 증가로 인한 신규 탈북자의 감소, 여권발급 확대에 따른 합법적인 중국방문 확대, 장사를 위한 단기체류의 증가 등으로 평가된다.³³

탈북주민은 중국 이외에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 및 한인사회가 존재하는 전 지역으로 이동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은 관련 민간단체 및 자원활동가의 지원을 받아 태국, 대만, 호주, 미국 등 세계각지에서 망명신청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대부분 체류지역보다는 한국행 또는 최종 희망지역을 가기 위한 경유지역이다.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와 몽골 지역은 탈북주민의 한국행을 위한 경유지 혹은 대기 장소로서 기능하였다.³⁴

향후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의 발생전망은 북한의 위기상황 전개과정과 관련국들의 처리대책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완화된다 할지라도 북한의 본격적인 경제 성장 이전까지는 생존을 위한 탈북과 좀 더 나은 생활을 찾아 탈북하는 경우가 혼재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인접국, 특히 중국에게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³³ 위의 글.

³⁴ 윤여상, “해외체류 탈북자 현지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동남아시아 체류자를 중심으로” (2002. 3) (미발간) <<http://www.iloveminority.com>> 참조.

3. 일반 사례와 북한과의 비교

가. 공통점

<노동시장의 수요>

북한주민의 국경이동이 일반적인 불법 국경이동과 유사한 점은 노동시장의 수요가 체류기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초기 탈북사태가 발생하였던 당시에는 북한주민에 대한 동정심과 우호적인 조선족 및 종교단체들의 지원이 주요한 탈북의 유도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불법으로 국경을 이동한 북한주민들의 현지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은신기반을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상황으로 발전되게 되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여성들이 보다 용이하게 안정적인 체류기반을 갖게 된다. 단기 농업시장의 계절노동자 경우에는 노동력을 보유한 남성의 단독 이주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대부분지역에서 장기체류를 위한 불법이동의 경우 여성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비공식부문의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성산업의 확대로 인해 불법적으로 여성들의 국경이동을 주선하거나 조직적으로 여성들을 인신매매하는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주민들의 국경이동도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즉 북한여성들은 국경이동 이후 사실혼관계를 맺거나, 중국의 개인가정에서 어린아이를 돌보는 보모 혹은 가정부, 노인이나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지 언어 습득 이후에는 식당이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비율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된다. 다른 지역에서와 같이 중국 내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수요가 크다는 점에

서, 여성들의 국경이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남성의 경우에는 중국 체류 중 단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안정적인 은신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는 여성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³⁵

나. 차이점

<정치적 의미 부과>

불법적인 국경이동에 대한 각 국가들의 통제는 보다 엄격해지고 있다. 따라서 불법이동이 발각될 경우 각 국의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처리되게 된다. 즉 불법체류자로서 단속되면 적절한 조사와 수용절차를 거쳐 해당국으로 추방되게 된다. 북한주민의 국경이동과 일반적인 불법이동과의 차이점은 북한의 경우 처벌이 단순한 출입국관리 차원의 처벌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남북간 체제 경쟁이 지속되어 왔었기 때문에, 허가 없이 국경을 넘은 경우를 ‘조국을 버린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에 당국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익숙해져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에서의 체포 및 구금기간 동안의 가혹행위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물론 국제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와 함께 최소한의 인권보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제기는 아직도 매우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이후 조사 및 처벌

³⁵ Joel Charny, “North Koreans in China: A Human Rights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13: 3, 2004, p. 83; Norma Kang Muico, *An Absence of Choice: The sexual Exploitation of North Korean Women in China* (Lodon: Anti-Slavery International, 2005), p. 2.

과정에서 개인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다른 사례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즉 불법국경이동에 대한 동기를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강제송환이후 북한당국의 조사과정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당국은 탈북했던 북한주민에 대해 국경이동 이후 남한사람 혹은 기독교인과 접촉여부, 남한 등 제3국으로의 재이동 시도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여 왔다.

<합법적인 제3국으로 재이동가능성 존재>

북한주민의 불법국경이동이 일반적인 사례와 차별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들에게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이라는 대안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이 한국으로의 입국을 보장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현지체류기간 동안 신분이 발각되면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감수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탈북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국 내 대한민국 영사관들이 탈북자의 입국경로로 작동하게 되었다. 또한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들의 남한입국을 돕는 인권단체 및 중개인들의 역할도 확대되어 왔다. 이와 같이 북한주민의 국경이동이 일반적인 불법국경이동과 다른 점은, 송환이후의 북한당국에 의한 처벌의 위험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호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불법 국경이동자들과는 달리, 탈북주민에게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주어져 있다는 점이다.

<동남아시아 여성매매와 차이점>

북한여성들의 인신매매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과 달리 국경이동 북한여성들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성산업에 투입되기 위한 조직적인 인신매매는 규모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³⁶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여성 및 여성아동에 대한 성매매 시장이 정책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비해 중국에서의 성산업은 수요는 존재하나, 정부차원에서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여성들은 이제까지 대부분 상업적인 매춘보다는 중국 남성과의 동거를 위한 거래에 관여되게 된다. 즉 동남아시아의 사례와는 달리 불법도강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이들을 강제노동에 활용하기 위한 조직적인 인신매매가 보편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³⁶ The Asia Foundation, *Feminization of Migration and Women's Migrants' Human Rights* (Public Policy Forum, September 26, 2005).

III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현지 체류실태

불법으로 국경을 이동한 북한주민들의 현지체류실태는 주로 중국 내에서의 생활에 초점을 두고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북한주민들의 국경이동이 일차적으로 이동이 용이한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탈북사태가 1990년대 중반부터 십여 년에 걸쳐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중국 내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의 체류실태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각 사안들이 시기별로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중국 내에서 직접 보호활동을 추진했던 국내민간단체들의 조사보고서,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보고서, 새터민들의 증언을 활용할 것이다.

1. 체류유형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은 중국에 친척이 있을 경우 친척을 찾아 이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국경을 넘어온다. 1996년과 1997년에는 이와 같은 친척방문의 경우 다른 친척들과 연계하여 도움을 받아서 곧바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친척들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다. 혹시 이웃이라도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존재가 알려지면 신고 되어 공안의 수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고 북한의 식량난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내 친척들도 경제력이 약하여 매번 찾아오는 북한의 친척을 도와주기가 벅거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친척을 찾아왔더라도 친척의 소개를 받아서 일자리를 얻고 돈을 벌고자 하는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중국에 계시는 외삼촌 집에서도 근래에는 련계가 끊어지고 매번 마다 달라고 우는 소리만 하니 중국에 계시는 친척도 맥이 진하여 련계를 하기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어 집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되니 할 수 없어서 도강하여 외삼촌 집을 겨우 찾아가 보니 지난해 농사가 전혀 되지 않아서 자기집 식구들이 식량도 모자라서 외삼촌 동생은 시내에 들어가 보이라 불을 때여 집 식구들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더는 외삼촌의 도움을 받지 못할 형편이 되어 일거리 찾아서 집으로 나갈 준비를 하려고 하여도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40세 여성, 함경북도 명천군)³⁷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이 더욱 악화되면서, <표 III-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중국에 친척을 두고 있지 않은 북한주민들도 생존을 위해 무작정 국경을 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국경을 넘어 이들의 상황에 대해 동정적인 중국 조선족들로부터 음식과 의복을 제공받거나 그들의 집에서 일을 해 주고 약간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표 III-1>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체류기반 (1998~1999)

거주형태	수 (명)	백분율 (%)
친척, 아는사람	3,051	10.7%
모르는 사람	10,642	37.4%
결 혼	14,769	51.9%
무 응 답	10	0.0%
합 계	28,472	100.0%

출처: 좋은벗들, “중국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 현지조사결과” (1998. 11~1999. 4).

³⁷ 좋은벗들, 중국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 현지조사결과 (1998. 11~1999. 4) <<http://www.jungto.org>> 재인용.

<표 III-2>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성별 구성 (1998~1999)

지역	성별	수 (명)	총백분율 (%)	유효백분율 (%)
연변 조선족자치주	남	5,666	36.5%	37.8%
	여	9,338	60.1%	62.2%
	무응답	521	3.4%	-
	소계	15,525	100.0%	100.0%
동북3성	남	1,175	9.1%	9.1%
	여	11,762	90.8%	90.9%
	무응답	10	0.1%	-
	소계	12,947	100.0%	100.0%
총 계	남	6,841	24.0%	24.5%
	여	21,100	74.1%	75.5%
	무응답	531	1.9%	-
	소계	28,472	100.0%	100.0%

출처: 좋은벗들, “중국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 현지조사결과” (1998. 11~1999. 4).

<표 III-3>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연령별 비율(1998~1999)

연령대	수 (명)	총백분율 (%)	유효백분율 (%)
10대 이하	770	2.7%	2.8%
20대	8,273	29.1%	29.6%
30대	8,851	31.1%	31.7%
40대	6,756	23.7%	24.2%
50대	2,531	8.9%	9.1%
60대 이상	735	2.6%	2.6%
무응답	556	2.0%	-
합 계	28,472	100.0%	100.0%

출처: 좋은벗들, “중국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 현지조사결과” (1998. 11~1999. 4).

<표 III-2>에서 와 같이 1998년 말과 1999년 초 당시 국경을 넘은 북한주민중 여성의 비율이 75.5%로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중 상당비율(51.9%)은 중국남성과 동거형태로 생활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식량난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여성 중에서도 중국에 시집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고, 중국에 왔다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착하는 경우가 늘게 되었다. 미혼여성뿐 아니라 남편과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들도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국 남성과 동거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런 여성들은 소개로 만나 사는 경우도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팔려가게 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거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인간적인 강제결혼 생활을 견디지 못해 도망쳐 나오기도 하지만,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는 한 가지 이유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실적으로 불법으로 강을 넘은 북한여성이 중국 내에서 남성과의 동거생활 이외의 다른 체류방식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현지어인 중국어를 거의 모르기 때문에 취업도 여의치 않으며, 공안의 단속에 쉽게 걸려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여성과의 면접에 따르면, 강을 넘은 북한여성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게 되면, 중국 남성과의 동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친척이 없이 무작정 넘어온 북한주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며 생활하기도 하였다. 국경이동의 규모가 급증하면서, 북한주민들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제공했을 경우 중국 공안에 발각되면 보호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의 벌금을 내야한다. 대부분의 조선족들은 같은 동포로서 일시적으로 보호해 줄 수는 있지만 장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며 모르는 사람을 보호해 주기는 부담스러워 하기

시작하였다. 어렵사리 일자리를 얻었다 해도 주인은 항상 긴장 속에 있다가 공안의 단속이 있을 것 같으면 이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표 III-4> 재외 체류시절 생활환경

생활 환경	친척집 (조선족)	현지인 (중국인) 가정	움막 등 은신처	시민종교 단체 운영시설	한국 정부 지원처	일정 주거 없음	기타	혼합	합계
인원 (비율)	20 (18.7)	43 (40.2)	4 (3.7)	4 (3.7)	10 (9.3)	15 (14.0)	9 (8.0)	2 (1.9)	107 (100.0)
생활비 조달 방법	중국내 가족친척 도움	한국내 가족친척 도움	조선족 도움	시민종교 단체 한국인 도움	직접 노동	한국정부 지원	구걸	기타	합계
인원 (비율)	14 (13.6)	10 (9.7)	18 (17.5)	7 (6.8)	42 (40.8)	5 (4.4)	1 (1.0)	6 (5.8)	103 (100.0)

출처: 윤여상, “북한주민의 국내입국 과정분석과 개선방안: 비제도적 입국과정과 전문개입자 역할을 중심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 『재외탈북자 및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04), p. 106.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구걸 등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10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구걸하며 거리를 배회하면서 기본적인 잠자리도 해결하기 어려웠다. 이들은 잠잘 곳이 없어서 역전이나 아파트 계단, 공사판 등에서 잠자리를 해결하고 낮에는 이 곳 저 곳을 떠돌며 구걸하며 생활하였다. 이들 중 대부분은 부모가 사망했거나 병을 앓고 있어서 가족에게 의지하여 살 수 없는 아이들이며 도리어 자신이 중국에서 구걸하여 벌어서 북한의 가족을 도와야 하는 형편이었다. 아이들은 대부분 영양실조로 신체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여 나이보다 3~4살 아래로 보이기 때문에, 나이가 차도 일자리를 얻기가 힘들어 부랑아처럼 거리

와 시장을 떠돌게 되었다. 탈북 어린이들 중 소수는 종교단체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이나 쉼터에서 보호를 받기도 하였다. 어린이 탈북자들의 경우 노동력이 없고 스스로 은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체포되어 강제송환되었다.

그러나 탈북주민의 중국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이들의 체류형태도 변화하게 되었다. <표 III-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기와는 달리 탈북주민들은 친척이나 조선족들 집에서 기거하는 비율보다 현지인 가정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탈북주민들이 현지어를 익히고, 취업을 하는 등 중국 내에서의 적응능력을 높이게 되는 경우에는 셋집을 얻어 기거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중국 내 한국인 기업이나 가정에서 일자리를 얻어 기거하는 경우들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탈북여성이 중국 체류 중인 한국남성과 동거하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다.

2.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가. 인신매매의 개념

국제법과 각국의 국내법은 인신매매의 반인권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인권단체들이 인신매매 활동을 감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0년 인신매매 의정서’(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Convention o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위협 혹은 폭력이나 기타의 강제력, 납치, 사기, 유인,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 활용,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금전 혹은 혜택을 주고받는 행위 등에 의해 ‘착취’(exploitation)의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이전, 은신, 접수하는 행위”를 통칭하고 있다. 여기서 착취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며, 착취는 “매춘 및 성적 착취, 강제노동 및 서비스, 노예상태에 준하는 행태 및 노예제, 장기절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가 밀입국매매(smuggling)와 다른 점은 불법적인 국경이동 주선이후에도 지속적인 착취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³⁸

국경이동 북한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존의 보고서들은 이들 여성들의 강제결혼 혹은 매춘 등을 강조하며, 인신매매의 사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는 북한을 미얀마, 캄보디아, 쿠바, 베네주엘라 등과 같이 제3군으로 분류하면서, 북한주민들이 강제노동과 성착취를 목적으로 매매되는 원천국으로 규정하는 한편, 북한당국이 인신매매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인신매매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⁹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인신매매실태는 시기에 따라 크게 변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시기별 유형변화와 더불어 북한당국의 처벌양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사례를 인신매매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유용성과 문제점을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이다.

³⁸ Anti-Slavery, “An Absence of Choice: The Sexual Exploitation of North Korean women in China,” p. 3.

³⁹ US Department of State, Th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June 2005. <<http://www.usinfo.state.gov/gi/Archive/2005/Sep/26-687070.html>> (검색일: 2005. 11. 2).

나. 인신매매의 실제 유형

(1) 북한 내에서의 인신매매유형

북한에서 활동하는 전문도강안내인들이 인신매매에 관여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주로 장마당이나 역전에서 만난 젊고 외모가 좋은 여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시집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가족들도 지원해줄 수 있다.”고 유인한다.⁴⁰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된 1997~1998년에는 가족 중의 한 명의 입이라도 더는 것이 급하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강력한 유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등 가족들에게도 솔깃한 제안으로 인식되었으며, 실제 부모가 자녀의 국경이동을 위해 친척 혹은 안내인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아래의 사례에서와 같이 이러한 과정에서 돈이 거래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하루는 어머님께서 저를 불러 놓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헤매며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 바쁘니 인제는 방법이 없다.” 나는 처음에 달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곱곰이 어머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니 울었습니다. 하여 나는 어머님과 약속하고 그렇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가서 소개하는 사람에게서 돈 1만원을 받고 저를 팔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제 자식을 타국에 팔겠습니까? 나는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나를 떠나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 근심은 하지 말고 너 하나만 가서 잘 살아라 하시고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녀는 이렇게 눈물로 작별하였습니다.

(24세 여성, 함경북도 회령시)⁴¹

⁴⁰ 2002년 입국한 장○○은 본인이, 량강도 대흥단군 역전에서 떠도는 여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고 재워주면서 중국에 가면 일자리를 구해 돈 벌게 해주겠다고 하여, 조선족에게 넘기는 경우를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⁴¹ 좋은벗들, 중국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 현지조사결과 (1998. 11~1999. 4) 재인용.

1997~1998년과 같이 북한 전 지역에서 식량난이 심각했던 시기에는, 북한주민의 불법 국경이동과 관련 알선행위가 실제 인신매매에 해당하는지, 단순 밀입국 알선인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많다. 즉 중국으로의 불법이동을 주선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북한주민들 자신이나 가족이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견되며, 이러한 경우에 북한알선자가 북한주민을 중국 조선족에게 인계하면서 금품을 거래하게 된다. 이러한 북한 내에서의 인신매매관련자들은 중국 조선족과의 밀접한 연계를 갖고, 북한주민들의 불법국경이동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⁴²

일부사례에서는 탈북경험이 있는 이웃주민이나 도강안내인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으며,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웃이나 친척과 동행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⁴³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북한을 방문한 중국 조선족의 도움으로 국경을 넘어, 도움을 준 조선족 남성과 동거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⁴² 2002년 입국한 새터민 김○○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여명의 북한인을 중국으로 보내주었다고 한다. “조선족의 요구로 1인당 4천 위안정도(21세 정도는 6천원, 30세 넘으면 3~4천 위안)를 받고 중국으로 보냈다. 당시 북한에서는 자발적으로 중국으로 시집보내달라는 여성들이 매우 많았다. 우리가 4천 위안 정도에 넘기면 한족들은 1만 위안 정도에 되팔곤 했다”는 것이다; 2002년 국내입국한 이○○과의 면담에 따르면, 1998년 함북 무산군 삼봉노동지구 호곡 20·30대후반의 여성 6명을 면담자의 어머니가 중국 조선족에게 넘겨주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어머니가 처음부터 인신매매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고 단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에 응한 것뿐이었는데 대가로 돈을 받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인신매매가 되어 버렸으며,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⁴³ 함북 청진출신의 장○○(2003년 입국)은 무산에서 만난 한 50대 여성이 중국에서 장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국경을 넘게 되었으며, 중국의 조선족에게 팔리게 되었다고 한다; 함북 단천출신 석○○(2003년 입국)은 삼촌이 다른 여성들과 함께 조카인 본인을 중국에 넘겨, 조선족 남성에게 팔리게 되었다.

(2) 중국 내에서의 인신매매 유형

북한주민들의 불법국경이동이 시작된 초기에는 상당수가 전문안내인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강을 건너는 경우가 가능하였다. 당시 단신으로 강을 건너왔으나 중국에서의 별다른 친척이나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북한주민들은 강변에서 이들의 불법국경이동을 목격한 중국조선족들이 호의를 보일 경우 이들을 신뢰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중국조선족들이 북한주민을 다른 조선족들에게 인계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경을 넘는 북한주민에게 음식과 옷을 제공하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시켜 주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대개 국경지역에서의 장기체류는 위험하니, 단속의 위험이 덜한 지역으로의 이동을 권유하고 북한주민이 이에 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상당수의 경우에는 본인이 돈을 받고 거래된 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언어가 통하지 않는 한족남성에게 팔려가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감금상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성적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주민의 불법 국경이동 규모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조직적으로 매매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조직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도시 역전이나 시장에서 북한주민을 붙잡아 넘기고자 하는 시도들이 빈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직적 인신매매는 대부분 몇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북한에서 여자를 모아서 넘기는 사람과 중국 국경 강변에서 인계 받는 사람, 그리고 일정장소에서 북한여성들을 은신시켜 두고 이들의 거래를 주선하는 사람 등이 관여하며, 단계별로 거래비는 상승하게 되었다.⁴⁴ 인신매매 조직의 경우에는 여성의

⁴⁴ 2002년 입국한 새터민 김○○은 중국 길림성 화룡시 거주 40대 조선족 강학금이 10여명의 북한여성을 조직적으로 인신매매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여성을 납치하여 거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조직적인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면서 국경에서 거리가 먼 중국 동북3성의 내지에 까지 북한주민들이 거래되게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남성들의 경우에도 노동력이 귀한 오지지역으로의 거래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중국에서 북한여성들을 사는 남성들은 농촌지역의 혼기를 놓친 남성, 사별하고 혼자 사는 고령의 남성,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결혼하지 못한 남성들이다. 초기에는 주로 조선족 남성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한족 남성의 비율도 증가하게 되었다.

우리 둘이 같이 도강하다가 동생이 얼음 구덩이에 빠졌는데 마침 웬 청년이 방조하여 구해냈습니다. 우리 두 형제는 이 청년을 따라가서 지냈는데, 수일 후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이 곳은 변경이기에 위험하니 남방에 가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둘은 귀인을 만난 것으로 생각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둘은 만원에 팔려 시집을 오게 됐던 것입니다. 나의 동생은 인물이 이쁘지만 저는 남자처럼 울퉁불퉁하게 생겼습니다. 다행하게도 저의 동생은 40세 되어 보이는 한족이었는데 저에게는 50세도 넘어 보이는 병어리였습니다. 시집 식구들은 제가 달아날까봐 밖에 갈 때면 살창문을 하고 자물쇠로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저를 벗기고 희롱했습니다. 저는 정신병이 올 정도로 되었습니다. 동생이 만난 신랑은 그래도 개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처지를 알아차린 동생 신랑은 저를 구해냈습니다.

(27세 여성, 함경북도 은덕군)⁴⁵

중국에서의 인신매매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부각되면서, 중국당국은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로

⁴⁵ 좋은벗들, “중국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 현지조사결과” (1998. 11~1999. 4) 재인용.

인해 조직적인 인신매매사례는 크게 근절된 것으로 평가된다.⁴⁶ 그러나 북한주민의 중국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북한주민들이 같은 처지의 불법체류 북한주민들의 인신매매에 관여하게 된다. 즉 인신매매에 관련된 조선족 등 중국남성과 동거하는 북한여성이 다른 북한여성들을 다른 중국인에게 넘기거나,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금전적 보상을 챙기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강제결혼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농촌여성들은 도시로 혹은 한국 등 외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이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 농촌지역에서는 남성이 결혼상대자를 찾기 어렵게 되었고, 특히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 결함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나이가 많아져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매우 높게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사회에서 결혼대상자 혹은 단순히 성적 욕구를 충족할 대상으로서 여성에 대한 수요가 잠재하여 왔다. 특히 조선족 농촌남성의 경우에는 언어소통이 가능하고 문화적으로도 북한여성들을 결혼 상대자로 받아들이기 위해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북한여성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로 인해 국경을 넘는 북한여성들은 중국남성들의 동거자로서 거래되게 된다. 일부 여성들은 본인들이 중국남성에게 팔린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하나, 상당수의 북한여성들은 본인들이 누구에게 팔려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중국남성에게 인계된다.

강제결혼의 형태로 소개된 경우에도 중국남성과의 동거가 장기간

⁴⁶ 통일연구원, 재외탈북자관련 NGO 및 전문가 워크숍 (2005. 6. 27).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나, 성적학대, 폭력, 음주나 도박으로 인해 가정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북한여성이 도주하거나 북한으로 강제송환이후 상대남성을 찾지 않게 된다. 성적학대를 받고 있는 북한 여성들은 심각한 부인과질병 등으로 고생하면서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였다.⁴⁷ 중국남성과 장기간 동거하게 되는 경우 임신하게 되면, 유산 혹은 출산을 상대남성이 결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상대남성이 북한여성과 사실혼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클수록, 출산을 선호하게 되며 북한여성에게 호구를 구입해줘 불법적인 신분을 면하게 하고자 노력한다. 물론 호구구입에는 거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강제결혼의 경우에도 북한여성과의 동거를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북한여성의 가족들에게 도강비용 등을 포함한 경제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저는 동포들이 가져온 옷을 입고 차를 타고 농촌에서 감자국수 가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 50세 되어 보이는 한족에게 팔렸습니다. 상처한 지 12년 되었는데 작은아들이 13살이었습니다. 나는 임시 있을 곳이 있으므로 매일 집을 건축하고 옷도 짓고 낡은 실을 풀어서 뜨게도 뒀습니다. 이 한족 분은 마음이 후한 분이어서 늘 저에게 일을 하지 말라고 손 시능했습니다. 제가 임신된 것을 알고 그는 저를 데리고 개인부인과 병원에 가서 유산시키고 그 후에 환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27세 여성, 함경북도 길주군)⁴⁸

다행히 나는 나보다 나이가 8년 이상인데 시집갔지만 저의 남편 되는 분은 마음씨가 착합니다. 하여 저를 무척 아끼고 사랑해주었으며 또 시부모들도 저를 끔찍이 생각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⁴⁷ 여성탈북자들의 실태는 백영옥, “중국 내 탈북 여성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6권 제1호 (2002) 참조.

⁴⁸ 좋은벗들, 중국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 현지조사결과 (1998. 11~1999. 4) 재인용.

하루 제가 임신한지 3달이 된 것을 안 마을 부녀 주임은 호구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서 무조건 유산하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유산을 하지 않을 때에는 돈 만원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당금 100원을 내놓아라 해도 바쁜 우리 신세 더구나 저를 사오느라고 4,000원이란 빚을 지게 되었는데 또 어떻게 빚을 질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병원에 가서 유산해 버렸습니다.

(23세 여성, 자강도 희천시)⁴⁹

(나) 자발적인 결혼

북한주민의 국경이동사태가 처음 발생한 1990년대 중반에는 북한 여성들이 친척 혹은 국경지역 조선족들의 소개에 의해 인근 조선족 노총각의 결혼상대로 소개되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의 대가로 조선족 가정이 소개자에 대해 금품을 지급하였다. 또한 소개의 과정이 폭력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았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여성의 생활 방편으로 결혼을 알선하고자 북한여성을 설득하게 된다. 즉 “시집을 보내 주겠다. 시집가서 살다 자리가 잡히면 고향에 있는 식구들을 도와 줄 수 있다.”는 논리로 설명하면, 식량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북한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에 상당수의 여성들이 동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미혼여성뿐만 아니라 기혼여성들도 결혼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여성을 중국남성에게 연계시켜주는 중개인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북한여성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돈을 받기는 하지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인신매매는 중국에서도 불법이기 때문에 발각될 경우 과중한 벌금을 물게 된다. 북한 여성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으로부터 인신매매자로 경계 받게 된다.

⁴⁹ 위의 글 재인용.

북한여성 본인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고 난 이후, 스스로 생활방편으로 중국남성과의 결혼을 택하게 된다. 아래의 사례와 같이 강제결혼과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애매한 경우도 상당수이다. 즉 중국에서 현지어를 하지 못하는 북한여성이 식당이나 공적인 장소에서 취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남성과의 사실혼관계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체류를 위해 동거를 선택하게 된다.

저는 흑룡강성 해림시에서 일자리를 찾느라고 돌아다니다가 어떤 30여세 되는 조선족 청년에게 붙잡혔는데 그는 자기가 경찰이라 하며 나를 데리고 갔는데 따라가 보니 해림시 부근 농촌마을이었 습니다. 여기에 와서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곳에서 돌아다니다가 한족에게 붙잡히게 되면 한족 로총각에게 팔려가게 되니 저더 러 이 마을에 있는 조선족 총각에게 시집가라고 하며 한 청년을 저에게 대면 시켰습니다. 저의 이런 처지에 낯선 곳에 비법적으로 도강해온 몸이기에 무조건 순종하는 길밖엔 없기에 저는 대답하 고 그 총각집에 따라갔습니다.

(23세 여성, 함경남도 단천군)⁵⁰

일반적으로 북한여성의 중국 내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현지어 습득 등을 통한 적응능력이 향상되면서 강제결혼의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 즉 강제결혼을 당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지 남성들이 동거를 제의하는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동거에 임하는 경우가 늘게 된다. 즉 현지식당 등에서 일하다가 손님으로 인면이 있는 중국조선족 혹은 한국남성들이 동거를 제의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증언된다. 또한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송금 혹은 북한 내 가족들의 국

⁵⁰ 위의 글 재인용.

경이동 주선 등 적극적인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관계인 경우에는 북한여성이 강제송환을 당하게 되어도, 재탈북하여 상대남성을 찾게 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대부분 재탈북을 감행하게 된다.

(다) 매춘

국경이동 북한여성의 대부분은 결혼의 형태로 거래되나, 일부 젊은 여성들은 노래방, 주점 등 유흥업소로 인계되어 매춘을 강요받게 된다. 이들 여성들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업주들이 이러한 불안정한 신분을 빌미로 협박할 경우 매춘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성병에 걸려 고통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이 매춘에 종사하는 북한여성의 비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게 되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노래방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유흥업소에서 매춘뿐만 아니라 이들을 소개하고 보호하는 중국남성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받는 경우도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라) 장기절제 및 밀매

인신매매의 목적이 성적착취나 강제노동을 넘어서, 불법 국경이동자의 장기를 절제하거나 밀매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가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즉 중국 내 북한주민들의 행방이 묘연한 경우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본 연구자도 면담과정에서 한 건의 사례도 접하지 못하였다.

다. 인신매매에 대한 북한의 처벌실태

북한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 서, 북한당국은 인신매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실시하였다. 북한여성을 중국에 매매한 개인에 대해 공개처형을 실시함으로써,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지속하였다.

<표 III-5> 인신매매관련 처벌기록

처벌 시기	처벌형태	처벌 장소	인신매매범 신상	증언자
1996. 가을	공개처형	함북 무산광산	-	장○○
1997. 8	공개처형	함북 온성 삼봉구	여성 1명 (61세)	조○○
1998	교화형	개천교화소	-	김○○
1998	교화형	-	김철호 (온성군 강안)	김○○
1998. 봄	공개처형	함북 온성 삼봉구	여성 2명 (50대, 60대)	2004년 11월 입국여성
1998	공개처형	함북 회령 유선탄광	부부 2명	이○○
1999	공개처형	함북 회령 유선탄광	여성 1명, 남성 2명	이○○
1999. 6	공개처형	양강도 혜산시	여성 1명 (45세)	김○○
1999. 8	공개처형	함북 무산 장마당	-	조○○
1999. 8	공개처형	함북 청진	안봉길 (34세)	허○○
2000	공개처형	함북 청진	남성 7명	이○○
2000. 6. 1	공개처형	함북 무산 장마당	엄희숙 (53세), 리영희 (37세)	박○○
2000. 1.	공개처형	함북 회령 장마당	여성 1명 (20대)	김○○
2001	15년 교화형	함북 온성	리연희의 남편	이○○
2002. 5	공개처형	함북 회령	여성 2명	이○○

<표 III-5>에서와 같이, 북한당국은 인신매매에 대해 공개처형과 같은 극형을 실시하였다. 물론 단순 도강안내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인신매매를 한 경우와 국경지역에서 마약 및 골동품 밀매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가 공개처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신매매에 대한 공개처형이 이루어진 지역은 주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무산, 회령, 청진, 온성 등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북한당국도 중국과 함께 인신매매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나름대로 대처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처형의 빈도로 볼 때, 1998년부터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이 보다 엄격해 진 것으로 파악된다. 인신매매 관여자는 공개처형의 대상으로 규정될 만큼 북한당국은 중국과 함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3. 노동유형

가. 단순 숙식해결

일을 하고도 노임을 받지 못하고 단순히 숙식만 해결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숙식제공 즉 은신기반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노동에 임하게 되는 것과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북한주민의 불법적인 신분을 악용하여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된다. 고용주들은 북한주민들에게 공안이 수색을 온다고 거짓말하거나,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임금을 주지 않고 쫓아내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특히 농촌에서는 농번기에 일을 시키고 추수하면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막상 가을이 되면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 하여 보수를 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와 같이 단순히 숙식만 해결해 주고,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규모가 급증하였던 초기에 주로 발생하였다. 이 당시에는 북한주민들이 중국에서 생존능력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은신처만 주어진다고 하면 임금을 받지 않더라도 노동에 임하게 되었다.

소개로 연결시의 한 집에 200원씩 준다고 하기에 두 달 벌여 돈 좀 쥐고 앓는 남편 살리자고 약정하고 보모질 하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집 구석구석 청소하고 밥 짓고 다섯 달 나는 아이까지 보는데 정말 앓을 사이조차 없었다. 그러나 개도 안 먹는 돈 때문에 열심히 일했다. 두 달이 다 될 때 하루는 집주인 마누라가 전화가 왔는데 우리 집에 수색 온다면서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하는데 돈은 며칠 있다 준다 하면서 주지 않았다. 그 후 찾아가니 집은 셋집이라 써 붙이고 사람은 보이지도 않았다.

(45세 여성, 함경북도 회령시)⁵¹

나. 저임금 노동

중국으로 이동한 북한주민들은 조선족 등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하루 혹은 한 달 단위로 소액의 임금을 받게 된다. 북한출신자들은 일반 중국인들이 희망하지 않는 힘들고 지저분한 직종에 종사하게 된다. 남자들은 농사일(온상관리, 과수원 등), 인분 수레 끌기, 가축 돌보기, 벌목공, 탄광, 건설, 채석장 등에서 일이 힘들거나 지저분하여 보통 중국인들이 꺼리는 일을 주로 한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산간오지 농촌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분 노출이 적어서 비교적 안전하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식당에

⁵¹ 위의 글 재인용.

서 감자껍질 벗기기, 채소 씻기 등의 주방일이나 식모, 보모, 기름 짜는 일, 약초 캐기, 환자시중, 뜨개질 등을 한다. 이외에 노래방이나 술집, 여관 등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렀다.

그러나 탈북주민을 보호하다가 적발되면 고액의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쉽게 일을 시키려 하지 않아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임금도 중국의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매우 저렴할 수밖에 없다. 1999년 당시 북한주민들이 받는 돈은 중국사회의 통상 임금(약 500위안)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약 150~250위안)가 대부분이었다.

<표 III-6>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생활유형 (1998~1999)

유민의 생활유형		유민수 (명)		백분율	
일하지 않음 (결혼, 친인척 의탁)		19,670		69.1%	
일을 하고 도움을 받음	지원금 받음	8,591	5,078	30.2%	17.8% (59%)
	숙식만 해결		3,513		12.4% (41%)
무응답		211		0.7%	
합계		28,472		100.0%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는 단순한 일, 즉 청소나 밥 짓는 일로 시작하더라도 주인에 의해 매춘을 강요당하고 점차로 본격적인 매춘행위에 가담하게 된다. 여성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남자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1998~1999년 당시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적인 노동을 할 경우에는 월 평균 245위안의 돈을 받았고 유흥업소의 경우는 월 평균 363위안을 받았다. 일당으로 받는 경우는 보통 6.6위안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된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체류장기화로 이들의 현지어 습득 및 취업능력

이 향상됨에 따라 일자리도 식당 복무원, 한국기업 직원, 한국인 주재인 가정정보 등으로 확대 되었다. 심지어 중국 공무원의 가정정보 혹은 간병인으로 일했던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와 함께 임금도 크게 상승하게 되었으며, 2004년 유흥업소에서 매춘까지 하는 경우에는 월 2,000위안까지 벌었던 것으로 증언되었다.

4. 단속 유형

가. 중국의 기본정책 및 단속논리

중국은 불법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을 1960년대 초 비밀리에 체결한 「밀입국자 송환협정」과 1986년 체결한 「국경지역업무협정」,⁵² 1998년 적용된 「길림성변경관리조례」⁵³에 따라 처리하여 왔다. 중국정부는 북한이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을 ‘범죄자’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실제로 조교(북한국적의 중국거류민)나 특무(북한 기관원)들의 활동을 묵인하면서 이들을 북한에 인도⁵⁴하여 왔다.

⁵² 1986년 8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公安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부 간에 체결된 『변경지역에서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상호협력의정서』는 20년간 유효한 것으로, 쌍방이 불법월경체류문제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불법월경자에 대한 명단과 자료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제4조 2항) 하였다. 단 재해로 인한 월경은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고(제4조 1항), 적절한 구호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1조 1항).

⁵³ 『길림성변경관리조례』는 1993년 11월 12일 제8기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통과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⁵⁴ 중국정부는 1996년 580명, 1997년 5,400명, 1998년 2,30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불법입국자로 규정하여 강제송환하였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대책의 현황 및 과제』 (1998. 9).

중국은 불법이동 북한주민들의 수가 계속 증가할 경우 중국의 사회 안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를 주시하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1996년 10월 18일 불법체류 북한주민의 증가로 리지조우(李紀周) 중국 공안부 부부장과 이명운 북한 국경경비총국 부국장이 북경에서 북한인의 불법월경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불법월경한 북한인들의 범죄행위가 중국 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북한측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⁵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7년 3월 14일 제8차 중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개정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된 새 형법에 ‘국경관리방해죄’가 추가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탈북과정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중국당국은 탈북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자를 국경과의 거리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여, 중국 내 체류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변방대대의 공안국 변방구류심사국에서 탈북자들을 수용, 일정기간 조사와 구호를 실시한 후 북한에 송환하고 있다. 평균 1주일에 1회 정도 송환하였으나, 특별 단속기간에는 탈북자 규모에 따라 송환빈도를 결정하여 왔다. 하지만 중국 변방구류심사국은 탈북자들에 대해 이전과 비교하여 우호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하였고, 깨끗한 의복을 제공하고 급식도 여유있게 실시하기도 하였다.⁵⁶

중국은 북한내 식량난으로 국경 밀거래가 성행하자 국경지역 밀수 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으며, 탈북자문제가 한국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대대적인 소환작업에 착수하였다. 중국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 북한의 적극적인 송환요구가 없을 경우, 소극적인 자

⁵⁵ 민족통일연구원, 『통일환경과 남북한관계: 1996~1997』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 60.

⁵⁶ 윤여상, “중국동북지역 탈북자 실태와 지원방안” (북한인권시민연합 월례회, 1998. 8. 13).

세로 목인 또는 방조해 왔다. 그러나 탈북자 수가 급증하여 사회문제화되자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게 되었다.⁵⁷ 중국은 탈북자를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을 갖고 있으나,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와 사회치안유지라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을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여 강제송환하고 있다. 중국은 유랑탈북자들의 범죄 연루로 인한 사회불안, 탈북자 보호관련 조선족사회의 민족의식 강화로 인한 소수민족정책에 대한 위협, 변경지역에서의 밀수 등 자국 내 이해관계로 인해 북한당국과 협조하고 있다. 다만 국경을 통한 대북 지원을 묵인하고, 발각시 강제송환을 통해 대량탈북자들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사태발생시 동북삼성을 제외한 지역에 분산시키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경이동 북한주민에 대한 난민지위 불인정도 대량탈북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 방법일 것이다. 또한 중국은 이러한 방침을 변경할 현실적인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다.

국내 인권단체들이 중국 내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의 인권실태를 폭로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탄원서를 준비하는 등 인권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자, 1999년 9월 주한중국대사는 “탈북자문제는 북·중간의 문제로 한국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중국정부가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압력과 우리 정부차원의 개입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국 공안당국은 베이징과 동북3성에서 사업가 등으로 활동하며 중국 내 국경이동 북한주민 보호에 관여해 온 정보요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작업을

⁵⁷ 중국 공안당국은 1998년 12월 16일 북한 인접도시인 통화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탈북자 150여명을 북한으로 압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안당국은 탈북자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대부분 산발적인 단속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와 같은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일보』, 1998년 12월 22일.

통해 1999년 7월 30여명을 추방하였다.⁵⁸ 동시에 길림성 장춘지역에서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60여명을 체포하고 이 가운데 탈북자를 보호하고 있는 목사 2명과 사업가 1명을 억류한 바 있다. 대부분의 경우 탈북자 지원운동을 하고 있는 국내 민간단체들은 위장한 종교인들로 중국은 불법적인 종교운동을 명분으로 이들을 처벌하여 왔다.

중국은 1999년 9월 5일부터 9일까지 북·중수교 50주년 기념행사차 북한을 방문한 중국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장이 귀국길에 연변(延邊)지역에 들러 국경이동 북한주민 문제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⁹ 이와 같이 중국은 국경이동 북한주민 문제의 확산으로 중앙정부차원의 관심을 갖고 사태를 주시하여 왔다. 중국은 1987년 북한과 북한이탈주민 송환협정을 체결했으며, 1999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이 아니라 ‘식량유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왕광야(王光亞)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 불법체류 북한주민을 경제적 이주자로 난민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하였다.

2001년부터 유엔고등판무관실과 서방 외교공관을 통한 일련의 기획망명사건으로 외교공관의 경비가 강화되면서, 다국적NGO들은 연대하여 해상을 통한 집단탈출계획을 시도하였으며 2003년 1월 20일 중국 산둥성 엔타이 항에서 78명의 탈북자와 관련인들을 체포하였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1월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 공안당국의 ‘보트피플’체포를 확인하면서 북한이탈주민과 이들을 돕는 NGO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하였다.⁶⁰ 2005년 8월 27일 엔타이 한

⁵⁸ 『중앙일보』, 1999년 9월 11일. 이로 인해 관련당국은 “중국내 정보활동이 지나치게 노출되어 요원들의 신변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데다, 중국과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100여명을 전원 철수시켰다.

⁵⁹ 『동아일보』, 1999년 10월 12일.

국학교 진입 북한주민 7명의 강제송환과 관련하여서도 중국당국은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을 돕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경고를 지속하였다.

나. 단속실태

(1) 체포시기

중국은 1998년 7월 이후 대대적인 탈북자 단속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1998년 7월 중국에서 탈북자 실태조사를 하다가 중국공안에 발각되어 탈북자 구류시설에 수감되었던 윤여상에 따르면 단속인원은 1998년 7월 이전까지는 매주 대략 100여명으로, 대대적 단속기간인 7월 이후는 전체적으로 300~400명까지로 추정된다.⁶¹ 이 당시 송환되는 북한주민의 다수는 4~13세 정도의 어린이들이었다. 성인들의 경우 노동력을 갖고 있고 도피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검거되는 경우가 적었으나, 어린이들의 경우 중국에 들어와 인정 많은 조선족 가정에서 2~3일 정도 숙식을 하고 나면 거리를 배회하다가 대부분 검거되었다.

좋은벗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시점(1998. 12~1999. 4)을 기준으로 조사된 마을에서 중국 공안에게 연행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

⁶⁰ 국경없는 의사회 등 관련단체들은 중국이 2002년 12월부터 탈북자 단속을 위한 '100일 작전'에 들어가 이미 3,200명을 북한에 송환하였으며, 지린(吉林)성 등에 1,300명이 구금상태에서 송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⁶¹ 송환규모는 두만강 유역 탈북자 수용시설 중 하나인 특정변방대대의 경우 7월 이전에는 매주 1차레씩 승합차를 이용하여 대략 15명 정도 송환했으나, 7월 이후는 매주 3차레씩 송환하고 있어 송환인원은 대략 40~50명 선에 이르고 있다. 두만강 유역에만도 변방대대 시설은 6~7개소이므로 두만강 지역만 대략 매주 300여명이 송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압록강 유역의 경우 면적은 두만강 유역보다 넓으나 압록강의 강폭이 상대적으로 넓고 깊으며, 감시가 심하고 또한 중국 변방지역에 조선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탈북자의 수도 적으며, 따라서 송환되는 수도 적다. 윤여상, "탈북자 실태와 지원체계: 중국지역을 중심으로," p. 187.

된 탈북자는 연변지역 1,857명, 동북3성 지역 584명에 이른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중국 동북부 지역 중 북한주민이 다수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중국 공안의 수색이 정기적으로(보통 월 1~2회) 이루어졌다. 따라서 북한주민이나 그들을 은신시키고 중국인은 늘 수색에 대비하여 경계하여야 한다. 북한주민들은 공안이 수색하러 온다는 정보를 얻게 되면 친척 또는 아는 사람의 집으로 피신하거나 집안에 마련해 놓은 비밀 장소, 산속에 있는 움막이나 동굴 등에 며칠이고 숨어 지내야 하였다.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노동력이 필요한 농번기에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추수기가 끝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시기에 공안에 신고하여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공안 당국의 수색 이외에도 이웃주민 혹은 고용주의 신고로 체포되는 경우도 있다. 고발로 인해 수색이 시작될 경우에는 불시에 이루어지며 끝까지 수색을 하기 때문에 체포될 가능성이 일반단속에 비해 높다. 또한 중국당국이 연말이나 연초와 같이 특정시기를 탈북자 특별단속시기로 규정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탈북자들의 인권침해상황이 언론에 부각되거나 탈북자 지원단체들의 도움으로 중국 내 외교공관 및 국제학교 진입, 탈북자 집단입국 등이 발생하면, 중국 공안당국의 집중단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이후 중국이 국경지역에 대한 경비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체포지역 및 회수

연구자가 면담한 개별사례를 보면, 체포지역은 국경을 넘은 북한주민들이 제3국으로 재이동하거나 혹은 중국 내에서 은신하고 있던 지역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두만강 국경지역에서부터

북경, 내몽골, 몽골 및 동남아국가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은신해 있는 동북삼성지역과 대도시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체포되고 있다. 체포 횟수를 보면 면담자중 일부(ID6, ID13, ID15, ID20)는 1997~1998년부터 2005년 입국시기까지 한 번도 체포의 경험이 없는 경우도 있다. 중국에서 체포를 당하지 않고 장기체류하는 비율은 도시지역에서 조선족 남성과 동거하고 있는 여성들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는 조선족 남성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단속의 위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단속의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원거주지를 떠나 대도시지역의 셋집으로 이동하여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주민들은 공안의 단속을 염려하여 개명(ID13, ID20)하였으며, 중국인의 호구를 구입(ID3, ID13)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으로 입국한 가족들의 지원을 받아 전문안내인을 통해 이동하는 경우(ID44, ID45)에는 체포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III-7> 체포지역 및 강제송환 빈도

ID	최초탈북 시기	최종탈북 시기	강제송환 횟수	강제송환 시기	체포시 체류지역
1	1997-01-21	1997-05-10	1회	1997-01-28	중국에 갔다가 귀환하는 길
2	1997-04-05	2004-09-14	2회	2001-06-14 2003-12-23	도문시 양수진 영화촌 집 북경시 브로커 아파트
3	1997-04-07	2003-12-28	2회	2002-06-24 2003-11-09	흑룡강성 해림시 홍성촌 흑룡강성 해림시 홍성촌
4	1997-05-17	1999-10-06	1회	1999-09-07	룡정시
5	1997-08-16	2002-02-24	1회	1998-03-22	북경
6	1997-09-16	1997-09-16	없음	-	-
7	1997-10-11	2000-10-20	2회	2000-07-15	화룡시 납치되어 끌려간 집
8	1997-12	2003-09	3회	2003-06-10	룡정시
9	1998-01	2002-11-15	1회	2002-05	난닝시
10	1998-03-10	2003-09-08	1회	2003-03-04	대련시
11	1998-03-18	2004-05-07	1회	2003-08-06	룡정시
12	1998-04-13	2001-10-28	1회	2000-06-01	흑룡강성 가목사
13	1998-05-09	1998-05-09	없음	-	한족 호구구입
14	1998-06-05	1998-06-15	1회	1998-06-15	북한국경 쪽 두만강변
15	1998-07-31	1998-07-31	없음	-	-
16	1998-08-01	2002-07-17	1회	2002-05-19	연길시 왕청현 서위자촌
17	1998-08-01	2002-07-17	1회	2002-05-19	연길시 왕청현 서위자촌
18	1998-08-05	2003-01-20	3회	2001-07	청도/심양/단동
19	1998-11-01	2002-11-20	1회	2000-01-12	연대시
20	1998-11-15	1998-11-15	없음	-	-
21	1999-03-02	2004-05-19	1회	2002-07-10	길림시 광(강)북
22	1999-04-07	2004-06-15	2회	2002-10-29	도문시 량수진 량수촌 집
23	1999-04-25	2003-01-26	1회	2002-10-15	룡정시 로토구 천보산진 집
24	1999-05-11	2003-11-02	4회	2000-07-26 2001-11-03 2002-02-27 2003-05-07	길림역 돈화시 대석두진 노래방 돈화시 대석두진 명성촌 내몽골지역 이동중

ID	최초탈북 시기	최종탈북 시기	강제송환 횟수	강제송환 시기	체포시 체류지역
25	1999-07	2003-12-24	1회	1999-05	절강성 황주
26	1999-11-15	2004-04-09	1회	2002-03-11	목단강시 영안시내 셋집
27	2000-01-13	2001-08-17	1회	2001-07-21	흑룡강성 조선족 집
28	2000-05-03	2002-03-08	1회	2001-07-25	연길시 셋집
29	2000-08-15	2003-03-17	1회	2000-08-25	룡정시 조선족집
30	2001-02-28	2003-07-17	1회	2002-04-28	연길시 왕청현 동명리 집
31	2001-08-24	2005-03-13	자진귀환	2002-04-26	현장검거후 즉시 석방
32	2002-01-18	2002-01-18	없음	-	-
33	2002-11-01	2001-11-01	없음	-	-
34	2002-12-06	2004-03-07	1회	2003-07-10	룡정시 룡문가 조선족 집
35	2003-02-01	2003-06-22	1회	2003-04-08	룡정시 삼합구룡촌
36	2003-03-23	2004-07-15	1회	2004-06-01	훈춘시 영안소재 조선족집
37	2003-10-14	2004-08-05	자진귀환	2004-08-04	자녀에게 돈을 주기 위해
38	2004-03-01	2004-03-01	없음	-	-
39	2004-09-23	2004-09-23	없음	-	-
40	2004-10-03	2004-10-03	없음	-	-
41	2004-11-01	2004-11-01	없음	-	-
42	2005-03-11	2005-03-11	없음	-	-
43	2005-03-22	2005-03-23	없음	-	-
44	2005-05-06	2005-05-06	없음	-	-
45	2005-05-06	2005-05-06	없음	-	-

(3) 체포경위

체포경위를 살펴보면, 두만강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경우(ID14), 한국 입국을 위해 이동 중 베이징 한국대사관(ID5), 공항(ID25), 베트남 국경(ID9), 내몽골행 기차(ID34), 밀항선(ID41)에서 체포되는 경우, 청혼을 거절하여 마을주민이 신고, 체포된 다른 북한주민의 진술(ID8, ID28), 도강안내인 혹은 인신매매인의 집에서 은신하다가 체포되는 경우, 역전에서 불심검문으로 체포된 경우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8> 체포장소 및 경위

ID	체포 장소	체포경위	체포자
1	온성 삼봉구 두만강변	중국에 갔다가 돌아가는 과정에 경비원에게 체포	북한군대
2	도문시 양수진 영화촌집 북경 브로커 아파트	동거하던 조선족집에서 공안에게 체포됨. 브로커로 활동하던 오빠가 주선하여 7명이 대기중	경찰
3	흑룡강성 해림시 집	이웃주민의 신고	경찰
4	연변 용정시 셋집에서	마을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	경찰
5	베이징 한국대사관 앞	대사관에 들어가려다 체포	중국군대
6	-	-	-
7	화룡시 납치꾼의 집	인신매매 납치꾼에게 납치되어 반항하여 싸우는데 이웃의 신고로 딸과 함께 납치꾼의 집에서 체포됨.	경찰
8	룡정시 남산 월세집	식당에서 일하던 탈북친구(여)가 밥먹으러 식당에 온 검사에게 붙잡힘. 검사가 추궁하자 자신이 사는곳을 말해서 체포됨.	파출소 직원
9	난닝시 핑샹 베트남 국경	베트남으로 가려던 중 신분증 조사에 걸림.	경찰
10	대련 밀항하는 배에서	배를 타고 밀항하는데 배가 6시간만에 되돌아옴.	군대
11	길림성 룡정시 산성	산에서 내려오던 중 체포됨.	경찰
12	흑룡강성 가목사 시장길	가목사 시장에 가던중 붙잡힘.	경찰
13	-	-	-
14	삼봉구 세관 방향 (국경 두만강변)	중국에 다녀오면서 두만강 방조제를 건너다가 붙잡힘.	북한군인
15	-	-	-
16	왕청현 서위자촌 친구집	청혼을 거절하여 조선족 마을주민이 신고	경찰
17	왕청현 서위자촌 친구집	언니가 청혼을 거절하자 조선족 마을주민이 신고	경찰

ID	체포 장소	체포경위	체포자
18	청도	마을에서 체포	경찰
19	중국 연대시 숙소	아침에 숙소에 탈북자 10여명과 함께 쳐들어옴.	경찰
20	-	-	-
21	길림시 강북 집에서	딸 2명이 학교에서 붙잡혀 공안과 함께 집에 옴.	경찰
22	도문 량수진 량수춘 집	신고	군대
23	룡정시 로토구 천보산진	동거하던 조선족 남성집에서 체포됨.	경찰
24	길림역	길림성 구태시 농촌에서 일하다 힘들어 돈화로 이동	경찰
	돈화시 대석두진 노래방	돈화시 대석두진 농촌일후 인근체류탈북자와 노래방	경찰
	돈화시 대석두진 명성촌	이전 체류지인 돈화시 대석두진 집에서 공안에 체포	경찰
	내몽골지역 이동중	한국입국위해 내몽골지역 이동중 철조망 통과중 체포	경찰
25	중국 철강성 황주 공항	비행기 탑승 중에 체포	공항군인
26	목단강시 영안시내 길거리	목단강시 영안에서 살던 중 누군가의 고발로 체포	경찰
27	흑룡강성 계서시 집	불시에 공안이 단속함.	경찰
28	연길시 셋집	동거남이 내연관계인 동료탈북여성과 불심검문체포후 은신사실 실토하여 공안이 출동함.	경찰
29	길림성 룡정시 조선족집	조선족여자가 어머니에게 '시집'갈 것을 권유했으나, 이모집에 간다며 거부한 후, 이모와 연락하여 대기중 일행 4명이 공안 7명에게 체포됨.	경찰
30	연길 왕청현 동명리 집	누군가의 신고로 붙잡힘.	경찰
31	-	자진귀환	-
32	-	-	-
33	-	-	-

ID	체포 장소	체포경위	체포자
34	룡정시 룡문가 기차안	한국행 중 내몽골과 중국국경사이 기차 안에서	경찰
35	룡정시 삼합구룡촌	군복착용 후 도강하여 넘어갔으나 변방대에 체포	군대
36	훈춘시 영안소재 집	밤 20시경 급습한 공안에게 검거됨.	경찰
37	-	자진귀환	-
38	-	-	-
39	-	-	-
40	-	-	-
41	-	-	-
42	-	-	-
43	-	-	-
44	-	-	-
45	-	-	-

다. 체포이후 중국 내 조사 및 구금실태

대부분 북한주민 체포는 국경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공안에 의해 이루어지며, 가혹행위 없이 수갑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공안시설로 이송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도주를 예방하기 위해 포승줄, 족쇄, 수갑을 채우게 된다. 중국에서 체포된 북한주민은 체포 기관에 따라 지역의 구금시설에 수용되었다가, 북한으로 송환되기 위해 국경지역의 변방구류소(도문, 용정, 단동, 화룡)로 이관된다. 국경에서 거리가 먼 중국 내지에서 체포된 경우에는 중간 경유시설을 거치게 된다. 즉 북한조교나 일반주민들의 밀고에 의해 경찰에 체포된 경우에는 해당구역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탈북자’로 확인되면 구치소 혹은 공안 감옥으로 이관되어 1주일 정도 억류되었다가 변방부

대로 넘겨진다. 변방부대에 체포된 경우에는 변방부대 구류장이 최초 수용시설이 된다.

변방구류소에 수감되기 전에 몸수색을 통해 일체개인물품 및 자해 수단이 될 수 있는 물품을 회수한다. 중국에서 체포된 이후 북한으로의 송환과정에 대해 일정한 절차와 규정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지하지 않는다. 체포된 북한주민들은 인적사항, 중국으로의 입국시기 및 목적, 중국 내에서의 체류생활, 한국행 시도 여부, 친척관계, 중국체류중 도움을 준 사람, 은신처, 이동경로 및 교통수단, 입국횟수, 종교단체 접근 여부 등을 매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받게 된다.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응하거나 북한주민을 은신하고 있는 중국인을 알려주면, 강제 송환하지 않고 석방하여 자유롭게 북한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회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명백하게 한국행 시도가 드러난 경우 이러한 사실(‘한국문세’)이 북한당국에 넘겨지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북한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삭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도 파악되었다.⁶² 중국당국은 자신들의 조사기록 전체가 북한당국에 이관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하기도 하며, 실제 약식의 문건이 이관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조사결과 송환 이후 북한주민들이 실제상황(도강횟수, 한국행 여부, 한국인 및 기독교인 접선 여부)을 끝까지 부인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⁶² 2002년 입국한 새터민 김○○은 2001년 12월 몽골국경지역 중국변방부대에 체포된 후 도문변방구류소로 이관되어 1개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국행 시도내용을 문건에서 삭제해줄 것을 간청하였으며, 중국공안은 공안의 문건을 모두 북한에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표 III-9> 체포이후 중국 내 구금실태

ID	체포후 최초 구금지	구금기간	중간경유지 (있을 경우만)	송환이전 최종구류시설	구금기간	총 구금 기간
1	-	-	-	-	-	-
2	양수진 파출소	-	-	도문 변방대	-	2일
3	해림시 공안국 해림시 공안국	3일 2일	-	도문 변방대 도문 변방대	6일 6일	9일 8일
4	용정 경찰서	4일	-	변방대	7일	11일
5	북경 감옥	10일	-	도문 변방구류소	10일	30일 (1달)
6	해당 없음	-	-	-	-	-
7	화룡 변방구류소	35일	-	-	-	35일
8	룡정 파출소	1일	-	변방대	7일	8일
9	핑샹	-	난닝감옥	도문 구류소	10일	10일
10	대련 감옥	15일	-	단동 구류소	3~4일	18~19일
11	성남 파출소	1일	-	용정 변방대	1일	2일
12	가목사 파출소	3일	-	도문 변방대	15일	18일
13	해당 없음	-	-	-	-	-
14	-	-	-	(귀환 중 북한에 체포)		-
15	해당 없음	-	-	-	-	-
16	왕청현 파출소	2시간	왕청현공안국	(5일)도문 변방 구류소	3일	8일
17	왕청현 파출소	2시간	왕청현공안국	(5일)도문 변방 구류소	3일	8일
18	청도	-	-	단동 변방대	-	-
19	연대시 감옥	20일	-	단동 변방대	15일	60일
20	해당 없음	-	-	-	-	-
21	광(강)북 감옥	2시간	-	도문 구류소	15일	16일
22	량수진 파출소	-	량수촌변방대	도문 변방대	7일	7일

ID	체포후 최초 구금지	구금기간	중간경유지 (있을 경우만)	송환이전 최종구류시설	구금기간	총 구금 기간
23	로토구 파출소	-	-	용정 변방대	-	-
24	길림역 돈화시 감옥 돈화시 감옥 내몽골(알렌휘터)	-	-	도문 변방구류소 도문 변방구류소 도문 변방구류소 단둥 변방구류소	-	2일 20일 22일 6일
25	황주공항	-	-	도문 구류소	-	45일
26	영안 감옥	20일	-	도문 구류소	21일	41일
27	계서 공안국	-	-	-	-	12일
28	연길시 공안국	-	-	도문 변방대	-	1일
29	룡정 파출소	-	-	용정 변방대	-	6일
30	왕청 경찰서	-	-	도문 변방대	-	15일
31	자진귀환	0일	-	-	-	-
32	해당 없음	-	-	-	-	-
33	해당 없음	-	-	-	-	-
34	연길시 공안국	4시간	-	도문 변방대 감옥	2개월	60일 (2달)
35	룡정 변방부대	-	룡정 구류소	이후 회령보위부 이송	-	45일
36	훈춘 공안국	-	-	-	-	6일
37	자진귀환	0일	-	-	-	-
38	해당 없음	-	-	-	-	-
39	해당 없음	-	-	-	-	-
40	해당 없음	-	-	-	-	-
41	해당 없음	-	-	-	-	-
42	해당 없음	-	-	-	-	-
43	해당 없음	-	-	-	-	-
44	해당 없음	-	-	-	-	-
45	해당 없음	-	-	-	-	-

중국 변방구류소의 경우 북한주민 만을 별도로 수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도문구류소의 경우 송환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축 확장되기도 하였다. 이들 시설에서는 식사는 3차례 지급되고 있으나, 수감 과정에서 자해의 수단이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한다는 명분하에 알몸 수색을 실시하여 왔다. 1998년까지는 중국 변방대원들이 체포된 탈북자들에게 대해 가능한 한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수색과 조사 과정에서 구타 및 전기곤봉 고문,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증언된다.⁶³ 특히 도문 변방구류소의 경우 2000년 집단 폭동이 있었고, 2002년 1월 사나운 개를 수용자 방에 풀어 넣어 위협하였다는 증언들이 다수 확보되었다.⁶⁴

5. 제3국으로의 재이동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은 안전한 신변확보 및 정착을 위해 제3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들의 재이동 목적지는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와 정착지원이 주어지는 대한민국이 된다. 이러한 재이동과정은 주중 한국영사관 혹은 대사관으로 진입하여 직접입국, 주중 서방외교공관 및 국제학교 등에 진입한 후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 중국인 혹은 한국

⁶³ 새터민 김○○은 북경 미 대사관 앞에서 체포된 후 2002년 8월 12일 단동으로 옮겨진 후 변방대대원들은 전기곤봉(찍찍이)으로 구타하거나 전기를 흐르게 하면서 심하게 구타하여 뒷덜미에 피가 흐르고 큰 상처를 입었으며, 한국 돈 7만 천원과 중국 돈 1800원 빼앗겼다. 변방대대 중위와 연락병이 주로 전기곤봉으로 전기를 흘려보냈다고 증언한다.

⁶⁴ 온성출신 새터민 이○○에 따르면, 2002년 1월경, 중국 도문변방대대에서 조선 사람을 모아놓고 개를 풀어서 몰도록 해 사망자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장이 처벌되었다. 면담자 ID22도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다.

인의 불법여권을 이용한 한국으로의 직접 입국(항공 혹은 선편이용), 동남아 국가의 한국대사관 혹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을 경유한 간접입국, 몽골을 통한 입국으로 크게 분류된다. 주중 한국 국제학교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영사관이 신변을 확보하고 일정기간 수용이후 국내로 입국시키게 된다.⁶⁵ 일본인 귀국자 본인이나 이들의 가족들은 일본으로의 재이동을 모색하여 왔으며, 일본은 각 개별사례를 참고하여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왔다. 즉 귀국자의 처로 북한에서 생활하다 탈북한 일본인의 가족들은 신분 확인이후 일본으로의 입국이 허용된다. 이러한 경우 일본인 처는 북한귀국과 함께 소멸된 일본인 국적을 재회복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들의 가족은 무국적자 혹은 한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체류허가를 갱신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

이러한 재이동과정은 대부분 중개인이나 관련단체의 협조 하에 이루어지게 된다. 극소수의 경우 단독으로 감행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매우 위험한 과정으로 보인다. 실제 이러한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재이동을 조직적으로 지원해 온 단체들의 활동은 기획입국으로 규정되어 왔다.

⁶⁵ 2005년 8월 29일 엔타이 한국인학교에 진입한 7명의 강제송환은 예외적인 사건이었다.

<표 III-10> 제3국 경유국가와 조력자

경유국가	조력자	북한-중국	중국-인근국가	인근국가-한국
중국	가족, 친척	27 (26.0)	10 (12.2)	5 (6.0)
러시아	조선족	22 (21.2)	-	-
중국-몽골	한족	1 (1.0)	-	-
중국-필리핀	브로커	-	34 (41.5)	11 (16.3)
중국-베트남- 캄보디아	시민단체	-	1 (1.2)	1 (1.2)
중국-미얀마 (라오스)	친구, 동행자	25 (24.0)	13 (15.9)	15 (18.1)
중국-베트남- 태국	선교사, 종교인	-	6 (7.3)	20 (24.1)
중국-러시아	중국인, 현지인	-	9 (11.0)	2 (2.4)
기타	혼자서	23 (22.1)	4 (4.9)	7 (8.4)
	기타	5 (5.8)	5 (6.1)	22 (26.5)
합계	합계	104 (100.0)	82 (100.0)	83 (100.0)

출처: 윤여상, “북한주민의 국내입국 과정분석과 개선방안: 비제도적 입국과정과 전문개입자 역할을 중심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 『재외탈북자 및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하계 북한인권워크숍, 2004), p. 104.

특히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입법을 계기로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기획입국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었다. 2004년 7월 22일 탈북자 기획입국에 연루된 비디오저널리스트 오영필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획탈북이 탈북자들의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획탈북이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으며,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시나리오의 일부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⁶⁶ 또한 미국의 자금지원을 받은 기획탈북단체들이 남한으

⁶⁶ 유병문, “쌀 한 톨 안보내면서 언론 통해 정치쇼… 그제 인권운동?,” 『민족21』, 통권 42호 (2004. 9. 1) pp. 30~35.

로의 입국 의사가 없는 탈북자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제 송환 탈북자들의 처벌은 어느 국가나 이루어지는 불법출입국에 대한 것으로 사형을 의미하는 ‘처형’은 근거 없는 추측의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도 있다.⁶⁷

<표 III-11> 입국과정의 소요비용과 수령자

지불 금액	비용 없음	200만원 미만	200~399만원	400~599만원	600~799만원	800~999만원	1000만원 이상	모른다	합계
인원 (유효 비율)	14 (26.0)	8 (14.8)	7 (13.0)	15 (27.8)	0	4 (7.4)	5 (9.3)	1 (1.9)	54 (100.0)
수령자	브로커	조선족	한족	종교시민단체	탈북자	기타	-	모른다	합계
인원 (비율)	22 (56.4)	5 (12.8)	3 (7.7)	0	6 (15.4)	0	-	3 (7.7)	39 (100.0)
지불 약속 금액	비용 없음	200만원 미만	200~399만원	400~599만원	600~799만원	800~999만원	1000만원 이상	모른다	합계
인원 (비율)	5 (9.6)	0	12 (20.7)	24 (41.4)	8 (13.8)	4 (6.9)	4 (6.9)	1 (1.7)	58 (100.0)
수령 예정자	브로커	조선족	한족	종교시민단체	탈북자	기타	-	모른다	합계
인원 (비율)	29 (56.9)	5 (9.8)	1 (2.0)	0	6 (11.8)	0	-	10 (19.6)	51 (100.0)
지불 약속 금액	비용 없음	200만원 미만	200~399만원	400~599만원	600~799만원	800~999만원	1000만원 이상	모른다	합계
인원 (비율)	-	-	14 (17.9)	37 (47.4)	9 (11.5)	6 (7.7)	12 (15.4)	-	78 (100.0)

출처: 윤여상, “북한주민의 국내입국 과정분석과 개선방안: 비제도적 입국과정과 전문개입자 역할을 중심으로,” pp. 107~108.

⁶⁷ 장창준, “북한인권법과 이북인권상황의 실제” (서울: 한국민권연구소, 2004. 10).

<표 III-12> 브로커에 대한 인식

구분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가 있지만 필요하다	필요성보다 문제가 더욱 크다	필요하지 않다	문제가 크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	기타	합계 (비율)
인원 (비율)	20 (19.6)	71 (69.6)	3 (2.9)	5 (4.9)	2 (2.0)	1 (1.0)	102 (100.0)

출처: 윤여상, “북한주민의 국내입국 과정분석과 개선방안: 비제도적 입국과정과 전문개입자 역할을 중심으로,” p. 109.

2004년 7월 동남아체류 북한주민들의 집단입국이 이루어지면서, 해외체류 북한주민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의 임종석의원은 기획입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탈북자’들의 성격이 경제적 이주민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⁶⁸ 또한 민주노동당은 재중 이북경제유민 실태조사 결과⁶⁹를 발표하면서, 기획탈북은 국제법위반으로 관련국간의 국제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간섭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탈북자’들의 국내입국지원을 ‘부도덕한 상업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인권단체들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북한 인권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고 비난하였다.⁷⁰ 동시에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상황은 인간이하의 생활이기 때문에, 남한입국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⁷¹

⁶⁸ “현재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정치적 망명자가 아니라 경제적 이주민에 대한 기획입국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획입국은 브로커가 개입된 부도덕한 상업행위이다. … 중국 거주 탈북자의 대부분은 식량확보를 위한 일시적 탈북으로 다시 북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으며, 중국 정착 내지 한국행이나 제3국행은 소수”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⁶⁹ 민주노동당, “기획탈북 브리핑 자료,” 2004년 11월 7일.

⁷⁰ <<http://www.nkgulag.org>>.

⁷¹ “북한 인권단체들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는 전체 탈북자들의 불과 몇%정도이다. 지금도 많은 탈북자들은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 숨죽이며 파리 목숨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폭력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못한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이후 관련단체와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의 재이동 목표에 미국이 추가되게 되었다.⁷² 초기에는 대부분 한국입국 후 일정기간 체류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여행자 신분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면서, 한인교회 및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망명이나 영주가 허용된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2005년 들어서 중국에서 직접 멕시코로 이동하여 미국으로의 입국을 계획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⁷³

다. 이들에겐 살아있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인간이하의 생활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유의 품으로 오기를 바라고 있다.”

⁷² 『연합뉴스』, 2004년 11월 16일.

⁷³ 『연합뉴스』, 2005년 9월 8일.

IV

강제송환 절차 및 처벌

1. 강제송환 이후 주요 조사내용

가. 불법 국경이동에 대한 처벌관련 북한의 법률 및 제도

북한주민의 탈출이 증가하고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면서 북한당국은 주민통제를 강화하여 왔다. 북한당국은 1995년 국경지대를 ‘전선지대’로 선포하고,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10군단’을 창설하는 등 국경경비를 강화하였다.

또한 북한은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탈북자 체포활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국가안전보위부 요원과 현지 공관원 등 3~4명으로 구성된 ‘체포조’를 편성하거나 ‘국가안전보위부 그루빠’를 현지에 파견하여 탈북자 색출·체포활동을 전개하면서 탈북자들이 체포되면 북한으로 송환시켜 왔다. 또한 북한은 불법 국경이동자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상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회유성 조치도 취해 왔다. 국경지역 주민들에게 「조국 배반자들의 실태」라는 교육비디오를 통해 “남한으로 귀순할 경우 정보를 캐낸 후 잔인하게 살해한다.”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도강자들의 귀환을 회유하기 위해 귀환한 북한주민들에 대해서는 김정일이 처벌하지 말라는 지시의 내용을 선전하였다.

북한당국은 송환된 도강자들을 초기에는 정치범으로 간주하여 정치범수용소에 특별관리하고, 가족들을 통제구역으로 강제이주 조치하였다. 그러나 도강자의 수가 급증하자 탈북 이후 체류기간과 탈북 동기에 따라 처벌강도를 달리하여 왔다. 1997년 9월 27일 이후 특정한 경우(보위부 및 사회안전원 집결소에서 관리)를 제외하고는 ‘9·

27 구호소’(꽃제비 수용소)에서 일정기간 수용 후 석방하는 등 처벌을 완화하였다. 1998년 2·13 조치 이후에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이탈한 주민들을 출신지역별로 분류하여 국경지역 주민들은 가볍게 처벌하고, 황해도 등 내륙지방주민들은 조국을 배신한 자로 규정 정치범으로 처벌하였다. 또한 도강자 가족에 대한 처벌은 완화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1992년 헌법 제86조에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98년 헌법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급증하는 탈북사태에 대응하여 처벌을 완화하였다. 1987년 형법 제47조는 탈북을 조국반역행위로 규정하여 7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1999년 형법은 탈북행위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단순월경행위, 즉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제117조)고 규정하고, 공화국전복목적탈출행위는 “공민이 공화국을 전복할 목적 밑에 다른 나라로 도망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4년 형법은 구형법의 단순월경행위에서 규정한 국경을 ‘넘는’ 자의 규정을 형법 제233조(비법국경출입죄)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법국경출입죄의 법정형을 ‘3년이하 노동교화형’에서 ‘2년이하 노동단련형’으로 완화하였다. 2년의 노동단련형은 1년의 노동교화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형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었다는 평가이다.⁷⁴ 2004년 형법 제62조는 ‘조국반역죄’를 “공민이 조

⁷⁴ 한인섭, “2004년 북한형법 개정의 내용과 그 의미: 죄형법정주의를 향한 일대 진전

국을 배반하고 다른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4년 4월 개정 형법 제4조(조국과 민족반역행위를 누우친자의 처리원칙)는 “국가는 조국과 민족을 반역한 행위를 한자라 하더라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 는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하여 2004년 7월 동남아체류 탈북자 집단입국이후 조국 전선편지에서 남한입국 탈북자들이 납치유인되었다고 규정하면서, 이들의 귀환을 촉구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⁷⁵ 국경관리부문 일군이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를 도와 준 국경출입협조죄(1999년 형법 제234조)를 ‘2년이상 7년 이하 로동교화형’에서 2004년 형법에서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으로 대폭완화하였다. 이는 탈북자의 수가 급증하고, 국경수비대 등이 북한주민의 ‘도강’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⁷⁶ 탈북자들은 비법월경죄 이외에도 외국화폐매매죄(104조), 외화관리질서위반죄(106조), 비법적으로 설비와 물자를 외화로 팔고 산 죄(107조), 력사유적 밀수, 밀매죄(198조) 등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출입국법(1996년 제정, 1999년 개정)은 “공민이

인가?” (북한법연구회 제93회 월례발표회, 2004. 12. 9).

⁷⁵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화해협의회 및 조선인권연구협회를 통해 ‘남조선당국자와 사이비 인권단체들’이 미국의 사주에 의해 탈북자들을 조직적으로 유인하여 납치한 것으로 비난하면서 이들의 송환을 촉구하였다.

⁷⁶ 좋은벗들에 따르면, 탈북초기와는 달리 최근에는 북한과 중국 양측의 국경경비대 등 간에 사전 약속을 통해 연계가 되어야만 안전하게 ‘도강’하여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2004년 10월 6일.

국경지역여행증명서 없이 출입국을 한 경우 벌금을 물리거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출입국법 45조).”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불법 국경이동자체에 대해 정치적 처벌규정을 대폭 완화하였다.

2. 처벌절차 및 주요내용

가. 개요

중국에서 단속된 북한주민들은 변방부대를 거쳐 송환지역 국가보위부에서 기본적인 조사와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본인의 거주지역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별사례에 따라 송환지역 노동단련대, 도집결소를 거쳐 지역기관으로 넘겨지는 경우도 있으며, 곧바로 지역기관(사회안전부, 지역노동단련대)으로 이송되기도 한다. 지역기관으로 넘겨지게 되면, 노동단련대나 기타의 처벌 없이 곧바로 석방되거나, 가정으로 보내져 매일 안전부에 출두하여 비판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송환이후 처벌절차는 최초 구금시설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며, 최초구금시설이 본인의 거주지에 소재한 경우 혹은 근거리인 경우에는 보다 단기간에 형이 결정되며, 형량도 본인의 가족들의 영향력 혹은 뇌물공여를 통해 크게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본인의 거주지가 국경지역 이관보위부와 거리가 먼 경우, 지역 사회안전부가 신변인수를 위해 출석하여야 하고, 이송과정에서의 도주우려, 운송수단의 확보, 가족에 대한 연락수단 미비 등으로 인해 장기간 구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1> 송환이후 처벌내용

ID	송환이후 최초구금 기관	기간	1차 구금기관	기간	2차 구금기관	기간	3차 구금기관	기간
1	온성안전부	1달	-	-	-	-	-	-
2	온성보위부 신의주보위부	2일 3달	온성단련대 온성단련대	7일 168일	생활고로 탈북한 사람에게 관대처리지시하달			
3	온성보위부	10일	온성 노동단련대 이간생	11일	온성 두루봉 분주소 (이모집에서 출퇴근조사)	50일	온성 노동단련대	14일
	온성보위부	6일			동일	34일		
4	회령시 안전부감옥	1달	-	-	-	-	-	-
5	온성보위부	-	-	-	-	-	-	-
6	해당 없음	-	-	-	-	-	-	-
7	2차-무산보위부	10일	무산단련대	-	평남 중산교화소로 가는 도중 목숨걸고 탈출			
	1차-무산보위부	3시간						
8	회령보위부	10일	삼봉보위부	-	온성보위부	2일	온성 노동단련대	1개월
9	온성보위부	3일	노동단련대	1달	고향안전부	-	-	-
10	신의주 보위부감옥	13일	신의주 안전부	15일	오빠가 고위층이라 바로 고향으로 감.			-
11	회령보위부	15일	-	-	-	-	-	-
12	온성보위부	-	-	-	-	-	연사군 안전부	-
13	해당 없음	-	-	-	-	-	-	-
14	온성군 보위부 (귀환 중 현지 체포됨)	-	-	-	-	-	-	-
15	해당 없음	-	-	-	-	-	-	-
16	온성 세관보위부	2일	온성집결소	3일	청진집결소	37일	무산안전부	2일
17	온성 세관보위부	2일	온성집결소	3일	청진집결소	37일	무산안전부	2일
18	신의주 보위부감옥	3달	집으로 감	-	-	-	-	-
19	신의주 보위부감옥	-	노동수용소	2달	-	-	-	4개월
20	해당 없음	-	-	-	-	-	-	-
21	온성보위부	-	온성단련대	-	청진 집결소	-	-	-

ID	송환이후 최초구금 기관	기간	1차 구금기관	기간	2차 구금기관	기간	3차 구금기관	기간
22	온성보위부	-	온성단련대	15일	-	-	-	-
23	회령보위부	30일	청진도 집결소	-	나남단련대	6달	1개월후 탈출	-
24	온성보위부 온성보위부 온성보위부 신의주보위부	-	온성단련대 온성단련대 평북도집결소	20일	도집결소이송 도집결소 도집결소	탈출 30일 5달	청암구역안 전부 비판서작성	9일
25	회령보위부	15일	-	-	-	-	-	-
26	온성보위부 감옥	4일	온성단련대	7일	청진집결소	2달	-	-
27	온성보위부	-	온성단련대	2일	부친의 온성내과병원 재직경력으로 방면	-	-	-
28	회령보위부	-	회령단련대	10일	청진집결소	7달	-	-
29	회령보위부	8일	신병인수확인서를 소지한 어랑군 운곡리 협동농장 간부 2명과 주소지로 이동 생활			-	-	-
30	온성보위부	-	-	-	-	-	새별안전부	-
31	국경경비대	0일	'먹고 살기 바빠서 도움을 받으러 갔었다'고 발언하라 충고 (71세)			-	-	-
32	해당 없음	-	-	-	-	-	-	-
33	해당 없음	-	-	-	-	-	-	-
34	온성보위부	2달	-	-	청진집결소	2달	길주단련대	4개월
35	회령보위부	-	-	-	-	-	회령단련대	-
36	새별보위부	10일	온성주원 분주소 출두	7일	처벌 없이 방면된 후 분주소 교양			-
37	자진귀환(무산)	0일	단속되지 않고 하루 만에 재탈북			-	-	-
38	해당 없음	-	-	-	-	-	-	-
39	해당 없음	-	-	-	-	-	-	-
40	해당 없음	-	-	-	-	-	-	-
41	해당 없음	-	-	-	-	-	-	-
42	해당 없음	-	-	-	-	-	-	-
43	해당 없음	-	-	-	-	-	-	-
44	해당 없음	-	-	-	-	-	-	-
45	해당 없음	-	-	-	-	-	-	-

처벌의 수위도 2000년 이후에는 수용소로 이관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노동단련대에서 1~6개월 정도의 ‘노동단련형’을 받게 된다. 송환이후 최종 석방까지 구금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는 매우 찾아보기 힘들다.

연구자의 면접과정에서 실제 북한주민들의 국경이동 장소도 온성, 회령, 무산지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기타의 지역(량강도 혜산, 새별, 해상을 통한 이동)에서 이동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송환지역도 대부분 두만강 교두를 통해 온성, 회령, 무산지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내지나 단둥으로부터 이송되는 경우 신의주를 거치게 된다.

나. 1차 수용기관

중국에서 송환된 북한주민들의 1차 수용기관에서는 처벌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송환지역에 소재한 국가보위부 구류소는 주로 온성, 무산, 회령, 신의주가 활용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알몸수색, 소지품 검사, 위생검사(에이즈 검사)를 거친 후 수용하게 된다. 구류장에서 남녀는 별도로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송환규모에 따라 분리수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구류장 내에서는 조사를 위해 호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부동자세를 취하도록 강요당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구타 등 처벌이 가해지게 된다.

몸수색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은 중국에서 가져온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던 것으로 증언된다. 즉 초기에는 신발 안이나 담배갑 속에 숨기다가, 신발 밑창을 뜯어 그 안에 넣거나, 비

닐로 말아서 신체의 은밀한 부위(항문, 자궁 등)에 넣거나 삼키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다. 돈을 먹었을 경우에는 돈이 배설되지 않고 장 속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기 위해 며칠 씹 굶는 방법을 택한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돈을 수색하기 위해 처음에는 보통 담뱃값 속이나 신발 안에 숨겼는데 이제는 항문 속이나 신발 밑창을 뜯어 그 안에 넣기도 하며, 돈을 비닐주머니에 싸서 먹기도 하고, 여성들의 경우는 자궁 안에 숨기는 등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이 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조사기관은 돈을 찾아내기 위해 자궁검사를 하거나, 발가벗긴 채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시키거나, 밥을 먹여 용변을 보도록 한 후 검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⁷⁷ 초기에는 중국에서 가져온 개인 신상품들을 압수하였으나, 일정시점부터는 소지했던 물건을 석방시 되돌려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경지역 보위부에서의 조사내용은 인적사항 및 주소지, 도강시기 및 회수, 도강이후의 행적(한국인 및 기독교인 접촉, 한국행 여부, 인신매매관련 여부, 음란물 및 한국영상물 시청여부)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국경 지역의 보위부에서 취조를 받은 뒤 ‘안전부 구류장’이나 국경 지역의 ‘도 집결소’로 보내진다.

북한의 형사소추절차에 따르면, 범죄혐의자의 범죄행위를 밝혀 내 기소 또는 사건기각을 위한 예심절차를 거쳐야 한다.⁷⁸ 예심은 과학적 증

⁷⁷ 2001년 3월말 어랑군 단련대에 수감중이던 새터민 오○○에 따르면, 송환된 탈북 여성들을 어랑군 단련대 지도원들이 담배불로 젖가슴을 지지고, 산부인과에 데려가서 하신(자궁)을 만지고 보는 행위를 계속하여 저질렀으나, 이것이 신고가 들어가서 2001년 3월 30일 지도원 1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3명(소장, 비서, 창고장)이 조사받고 떨어져 추방되었다. 이후 이런 행위가 없어졌다고 한다. 새터민 오○○,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2월 15일.

⁷⁸ 북한법연구회 편. 『김정일체제하의 북한법령집』 (서울: 북한법연구회, 2005), p. 180.

거를 찾아내고 검토하여 범죄사실을 확정하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불법국경이동에 대해서는 본인 및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 소지품 등이 범죄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르면, 범죄의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검증 및 검진할 경우 “2명의 립회인을 세워야 하며, 녀성을 검진할 경우에는 녀성을 립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강의 목적과 중국내에서의 행적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고, 다른 송환자를 통해 정보를 캐내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타 및 언어폭력, 위협 등이 이루어지고, 형 감면을 명분으로 다른 송환자의 중국 내 행적을 증언하도록 유도한다. 예심기간은 2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004년 형법에서 로동단련형이 신설됨에 따라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10일 내로 종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예심을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의 경우 검사의 승인에 따라 구류를 1개월 까지 연장할 수 있다. 로동단련형의 예심은 취조하여 넘긴 증거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종결할 수 있다.

임신한 피심자에 대해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는 구류 구속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1999년과 2004년 형사소송법 제106조)되어 있으나, 새터민들과의 면담결과를 살펴보면 출산 전후 10개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경지역 보위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강제낙태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표 IV-2> 강제송환된 임신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시기	장소	내용	증언일시 (증언자)
1998.	신의주 보위부	해산일이 임박한 산모를 주사로 낙태 목격	2005. 1. 15 (김○○)
2001. 4. 6.	온성군 노동단련대	청진출신 20대여성이 임신월수를 두 달 속여 한쪽 아이를 출산하자, 함북온성군 군인민병원 간호원이 아이에게 주사투여	2005. 1. 14
2002.	온성단련대	임산부에 대하여 배를 걸어차는 것은 일상적인 일	2003. 4. 26 (최○○)
2002. 10.	청진도집결소	한쪽아이라고 해산후 방치하여 사망	2005. 1. 17 (주○○)
2004. 1. 6.	청진도집결소	20대 후반 산모가 먹지 못해 사산	2005. 1. 17
2004. 3.	온성보위부	강제낙태	2005. 1. 17 (이○○)
2004. 2.	온성단련대	온성구 남양출신 최정숙이라는 산모 강제낙태	2005. 1. 17 (김○○)
2004. 7. 7.	회령단련대	32세 산모 강제낙태	2005. 1. 15 (이○○)

강제송환자에 대한 처벌기록을 보면 1999년 이후에는 대부분 노동 단련형을 선고받아 왔다. 이러한 노동단련형은 1999년 형법에는 규정되지 않고, 2004년 형법에 명문화되었다. 2004년 이전에 이루어진 노동단련형은 판결판정집행법과 검찰감시법에 명시된 노동단련 및 무보수 노동 규정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단련 및 무보수 노동을 적용하는 판정의 집행을 위해서는 해당권한이 있는 기관에 판정서등본, 확정통지서를 보내도록 규정(판결판정집행법 제43조)하고 있다. 따라서 송환자의 형 판정은 재판소의 판정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 2차 수용기관

1차 조사를 통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거주지역 노동단련대에서 ‘로동단련형’을 받게 된다. 노동단련대는 조사기관이 아니라 노동단련형을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엄격한 생활관리를 실시하고 노동의 강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형기는 최초 구류시점까지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대부분 송환자들은 로동단련형이 선고된 이후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본인의 정확한 죄목과 형기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판소가 집행을 중지 또는 정지하는 판정을 하는 사유의 하나로 “로동교화형, 로동단련, 무보수 로동의 처벌을 받은자가 중병에 걸려있거나 산전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여성일 경우”(판결판정집행법 제18조 3항)를 들고 있다. 새터민 면담결과를 보면, 사망이 임박하다고 판단되는 중병(결핵, 탈수증, 허약 등)인 경우에는 형이 중지되고, 거주지역의 안전원에게 호송해 가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출산전후 10개월에 해당하는 임신부의 경우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오히려 형 집행과정에서 임신 여성을 노동을 시키거나 구타하여 유산을 유도하는 경우, 주사로 약물을 투여하여 낙태시키는 경우들이 발생하였다. 또한 출산한 여성들의 아이를 돌보지 않음으로써 사망하도록 유기하는 조치들을 안전원들이 직접 하거나 혹은 조기석방을 명분으로 동료 수감자가 영아유기를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라. 3차 수용기관

3차 수용시설인 도단위 집결소는 로동단련형 집행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이 드러나거나, 해명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장기간 구금이 필요한 경우 수용된다. 그 곳에서 다시 북한주민이 원래 거주하던 도 지역의 ‘도 집결소’로 보내졌다가 해당 지역 보위부로 넘겨져 재판과 처벌을 받는다. 집결소는 지역단위의 범죄인을 일정기간 구류하는 장소로 도단위로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인근 지역 역에서는 단속이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시기별 변화 분석

가. 강제송환이후 처벌

강제송환된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면서 북한당국은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탈북주민 체포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실제 송환자에 대한 처벌도 완화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⁷⁹

(1) 1995년 이전

초기에는 북한은 송환된 탈북주민들을 초기에는 정치범으로 간주하여 정치범수용소에 특별관리하고, 가족들을 통제구역으로 강제이주 조치하였다. 북한은 1993년부터 사회안전성 경비대외에 인민무력부 병

⁷⁹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탈북자들의 탈출과정과 송환후의 운명,” 통권 25호 (2002. 6).

력을 국경지역에 증강하여 탈북자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였으며, 탈북자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공개처형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탈북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상에 반대했다는 죄목으로 전원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였다.

새터민들의 개별면접결과에 따르면, 1992년 함남 부전군 출신 리○○가 한국으로 입국하자 그 형을 관리소로 이관하였으며, 1993년 신포조선소 경리과장 전○○의 동생이 러시아 별목안전원으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시집간 여동생을 제외한 가족 전원을 강제이주조치하였다. 1993년 국경을 넘어 중국에서 1993년 11월 21일 체포된 새터민 배○○은 단동구류소에서 신의주보위부(1993. 11. 26)로 이송되었으며, 신의주보위부 구류장에서 6개월 수용되었다가 1994년 4월 3년형을 선고받고 요덕 혁명화구역에 수감되었다.

이와 같이 1995년 이전에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행위자체가 ‘정치범죄’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처벌의 대상으로 처리되었다.

(2) 1995~1998년까지 탈북자 처벌

1995년 식량난이 가시화되면서, 점차 경제적인 이유로 국경을 넘는 북한주민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9월 27일 이후 특정한 경우(보위부 및 사회안전원 집결소에서 관리)를 제외하고는 ‘9·27 구호소’(꽃재비 수용소)에서 일정기간 수용 후 석방하는 등 처벌을 완화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주민의 국경이동이 증가하면서 국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⁸⁰ 국가안전보위부를 활용한 국

⁸⁰ 북한당국은 1995년경부터 국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조국 배반자들의 실패』라는 교육비디오를 상영하여 왔다. 귀순자는 다 사살되며, 생포한 귀순자를 대상으로 여자들이 회유해서 정보를 캐낸 후 잔인하게 살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이동 북한주민 체포활동을 강화하는 등 탈북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탈북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여 왔다. 국경이동 북한주민 본인만 반역죄에 해당되지 가족은 그렇지 않다고 하여 정치범수용소로는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한국으로 입국해도 그 가족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일반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오지로 추방하여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여 왔다. 그러나 국경이동 북한주민 가족들은 일반주민들이 역적의 집안으로 몰아 비판하여 따돌리거나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도 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된다.

불법 국경이동 북한주민이 중국세관지역에서 북한보위부로 이관되면 해당지역 보위부로 호송된다. 이들은 보위부 반탐과(反探課)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몸수색을 하고 돈, 귀중품을 회수 당하게 된다. 이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에 의거 거짓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며, 거짓진술시 2~3년 이하의 교화형에 처한다는 내용에 서명하고 진술서를 쓰도록 되어있다. 진술서에는 탈북자의 이름, 생년월일, 친척, 이력, 탈북목적, 탈북과정, 중국에서의 생활 등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이후 대부분 사회안전부 구치소로 호송되어 추가 심문을 받게 된다. 탈북자의 급증으로 구치소 내 수용인원이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고개를 수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아기 엄마 혹은 어린아이를 집에 둔 여성, 어린이 등의 탈북자는 조기 석방되고, 경미한 탈북자들은 거주지역의 노동단련대(‘깡판’, ‘꽃마크’)로 보내진다. 다른 지역의 탈북자들의 경우에는 안전원들의 호송 하에 거주지로 이송된다.⁸¹ 거주지

⁸¹ 탈북자들의 거주지역 안전원들의 호송이 지연될수록 탈북자들의 상황이 열악해진다.

인민보안성 구치소에서 다시 진술서를 쓰고 조사를 받은 후 단순도강자는 노동단련대에, 기독교인 및 남한입국 접촉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화소로 보내진다. 북한은 탈북자들에 대해 ‘변절자’⁸², ‘비겁자’⁸³, ‘정신병자’⁸⁴, ‘인간쓰레기’⁸⁵, ‘범죄자’⁸⁶, ‘미제간첩’, ‘국정원 뿌락치’로 규정하며 비난하여 왔다.

본 연구자의 면담에 따르면, 1995년 최○○ 형제(라진탄광 노동자 40대)가 ‘도강죄’로 회령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중 아사하였다. 1997년에는 회령시 향암리 여성 1명이 중국으로 탈출하던 중 중국 삼합 변방대 대원의 총격으로 현장에서 사살되었으며 시신은 북한으로 이관된 바 있다.⁸⁷ 함흥출신 새터민 전○○은 1997년 6월 량강도 혜산시 9·27 상무회에서 도강혐의로 구타를 당하였다. 1997년경 불법으로

⁸² 1997년 황장엽 망명사건에 대해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변절자’로 규정(1997. 2. 17)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의 ‘육친적 배려’ 즉, 은덕을 배신한 것에 대한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시함과 함께 주민들의 도용을 막기 위해 탈북자를 사회주의 혁명을 포기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배신한 배신자로 규정, 영원히 국가와 주민들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⁸³ 북한은 탈북자들을 경제난이 심화되고 주변국의 위협이 증대되자 국가와 주민을 버리고 도망간 ‘비겁자’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방송(1997. 2. 16)을 통해 북한은 “비겁자여 갈테면 가라”라는 혁명가요의 1절을 인용, 황장엽의 망명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킬 것”임을 강조, 어떤 경우에도 사회주의를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⁸⁴ 황장엽씨의 망명이후 행적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나타낸 북한은 황장엽을 ‘정신병자’로 취급하였다. 1998년 5월 7일 북한은 『민민전』 방송을 통해 황장엽의 각종 북한 비난발언에 대해 ‘마귀같은 사람’, ‘정신병자’ 등의 용어를 사용 비난하였다.

⁸⁵ 1997년 6월 북한은 『청년전위』를 통해 탈북자들을 ‘추악한 인간쓰레기’라고 비난하였는 바, 특히 황장엽씨를 겨냥하여 각종 험담을 하였다. 북한은 “혁명적 양심은 개인의 생명보다 집단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고 개인의 이익보다 당과 혁명의 이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이자 높은 책임감”이라고 강조하고, “당과 수령의 은덕을 배반하고 혁명적 양심을 저버리는 것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너절한 것으로 된다.”고 말하고 있다.

⁸⁶ 북한은 탈북자들이 체제불만자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비도덕적 인간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범죄자’, ‘공공형명자’로 규정하고 있다.

⁸⁷ 새터민 정○,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9월 1일.

국경을 넘어 중국에 가서 누드사진을 촬영한 박○○(삭주제화공장)은 사진이 주패장에서 나돌면서 매춘사실이 추가되어 처형되었다.⁸⁸

(3) 1998년 이후 국경이동 북한주민 처벌

1998년 이후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급격한 증가와 북한의 경제난으로 사회질서가 이완되면서 국경이동 북한주민에 대한 처벌도 현저히 약화되었다. 또한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실태가 국제사회에 부각되면서,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의 처벌이 보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전과는 달리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송환된 국경이동 북한주민을 보위부에서 수감하고 ‘취급’(조사)하게 된다. 조사를 통해 밀수 및 단순월경자는 사회안전부가 취조하도록 하여 도검질소에서 강제노동을 시키고, 한국인, 교회, 외국인과 관련이 있는 정치범 혐의자는 ‘보위부대상’으로 분류되어 조사를 받다가 관리소나 교화소로 넘겨진다.

1998년 2·13 조치이후에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이탈한 주민들을 출신지역별로 분류하여 국경지역 주민들은 가볍게 처벌하고, 황해도 등 내륙지방주민들은 조국을 배신한 자로 규정 정치범으로 처벌하였다. 이와 함께 국경이동 북한주민 가족에 대한 처벌이 대폭 완화되었다. 그리고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증가와 함께 국경이동 북한주민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노동단련대’에서의 처벌과정에서도 영양실조, 질병감염 등으로 사망하는 사례들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당국은 헌법에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배반죄(구헌

⁸⁸ 새터민 류○○,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6월 28일.

법 제86조)를 삭제하는 등 급증하는 탈북사태에 대응하여 처벌을 완화하여 왔다. 북한당국은 국경이동 북한주민 개인의 출신지역⁸⁹, 출신성분, 연령, 탈북기간, 체류지역 등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

식량사정으로 인한 월경일 경우에는 1주일~15일 정도 구류후 석방하는 수준의 미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경이동 북한주민이 급증하고 있다. 송환자 수용시설 탈북자 중 20~30%는 탈북 경험자들로, 재탈북 어린이는 “첫 탈북시 잡혀 송환되었을 때 첫날은 사회안전성의 1평 미만 크기의 방에 6명이 함께 수용되어 있었다. 이후 5일 동안은 꽃제비 수용소(북한의 부랑아 수용시설을 의미)에 수용되어 있다가 가정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⁹⁰ 이 어린이는 아버지의 권유와 학교 동료들의 놀림 때문에 재탈북하였다. 가정으로 돌아간 후 다시 학교에 다녔으나 선생님과 동무들이 조국을 버리고 중국에 갔다온 아이라고 놀려서 학교에 나가는 것도 싫었다고 증언하였다.⁹¹ 성인의 경우에도 강제송환된 이후 경미한 처벌을 받았으나, 억울하게 절도사건 누명을 씌우고 폭행하는 등 이웃들의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여 재탈북을 시도하기도 한다.⁹²

이와 같이 탈북자 수가 급증하자 국경이동 북한주민 송환 후 1주일 정도 구류생활을 한 후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있으며, 이후의 지속적인 감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당국은 국경이동 북한주민 발생시 남은 가족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남한으로의 입국을 시도한 경우 등 특수한

⁸⁹ 국경지역 거주자는 탈북으로 체포되어도 각 시·군 사회안전성에 설치된 구류장에 감금후 석방하나, 내륙지역 거주자는 체포시 완전한 도주로 간주하여 ‘노동교양소’나 ‘교화소’에 수용하는 등 엄하게 처벌하였다.

⁹⁰ 윤여상, “탈북자 실태와 지원체계: 중국지역을 중심으로,” p. 188.

⁹¹ 위의 글.

⁹² 새터민,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1999년 4월.

경우에는 여전히 정치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시기에 따라 시범적인 처벌조치로 신체일부를 절단하는 체형을 가하기도 한다.⁹³ 탈북자중 북한당국에 체포될 경우, 남한사람과 접촉한 경우 혹은 기독교선교단체와 연관된 경우에 중형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기독교를 체제위협적인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 3월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3개월간의 탈북주민 집중수색기간을 설정하여 수색과 강제송환을 강화하였지만, 북한 내에서는 처벌이 심하지 않았다.⁹⁴ 이러한 집중단속은 6월 이후 다시 완화되었으며, 이는 북한내부에서 남북정상회담관련 북한주민들에 대한 독려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은 2000년 6월 14일 오후 3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있는 제2차 정상회담시 “탈북자들은 눈물을 흘리며…”라고 언급, 탈북자에 대한 연민의 정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새터민 김○○에 따르면, 2000년 7월 ‘도강죄’로 회령보위부를 거쳐 온성군 구류장에 수감되었으나 ‘탈북자처벌 완화에 대한 김정일 친필방침’이 발표되어 바로 석방되었으며, 이러한 조치는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다.⁹⁵ 이러한 중앙으로부터 지침에 의한 일시적 처벌완화는 2001년에도 발견되고 있다. ID35의 경우에도 2001년 6월 12일 도문변방대에서 온성보위부로 이송되었으나, 당시 생활고로 탈북했다 송환된 자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리를 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어 6월 23일 석방되었다. ID38도 2001년 12월 1일 도문변방구류소에서 온성보위부로 넘겨졌으며, 12월 30일 도 집결소 강제노동중 ‘김정일의 대사령’으

⁹³ 재외탈북자 지원관련 비공식 모임에서 1998년 9월 한기총 실무자가 발표하였다.

⁹⁴ 미국의 난민위원회(USCR)은 2000년 6월에 1만 5천명이 강제로 북한에 송환되는 등 한 해 동안 최소한 6천 명이 송환됐다고 밝혔다.

⁹⁵ 새터민 김○○,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터뷰 시 증언, 2002년 11월 30일.

로 석방된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2004년 7월 동남아체류 북한주민들의 집단입국이후 북한은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화해협의회 및 조선인권연구협회를 통해 ‘남조선당국자와 사이비 인권단체들’이 미국의 사주에 의해 탈북자들을 조직적으로 유인하여 납치한 것으로 비난하면서 이들의 송환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대응은 주요인사가 아닌 일반탈북자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던 전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북한의 이례적인 반응은 집단입국이 우리정부가 제공한 특별기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수용으로의 탈북자정책전환 혹은 대량탈북의 전조로 평가되는 것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 또한 미국 북한인권법과 탈북자문제가 연계될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북한이 유엔차원의 대북 합동지원호소(Consolidated Appeal Process)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힌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이 현실화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 8월 18일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탈북자들에게 귀환을 호소하고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대외적으로 천명하였다. ‘남조선에 끌려간 동포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탈북자들을 ‘몇 푼의 돈이라도 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 국경을 넘었던 당신들’로 지칭하면서, “당신들은 이국땅을 방황했던 고달픈 나날들에 돈과 물건을 주면서 남조선에 가면 팔자를 고칠 것처럼 유혹하는 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암흑의 세상으로 끌려갔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간접적으로 ‘탈북자’들의 중국에서의 실태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4년에는 미국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함께 10월부터 2005년 2월 8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였고, 남한입국 북한주민 가족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⁹⁶

이와 같이 일반적인 도강행위에 대해 정치적 처벌이 크게 완화된 반면, 한국행을 시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정치범으로 처벌을 지속하고 있다. 1998년 가족이 몽골 탈출과정에 체포되어 송환된 새터민 김○○과의 면담에 따르면, 부친(김영남, 54세, 온성군 관개관리소 노동자)이 혼자 책임지고 요덕수용소로 수감되고 다른 가족들은 석방되었다. 1998년 가족 11명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지역을 이동하면서 한국행을 모색하다가 핑샹공안에 체포되어 도문 변방구류소로 이관되었던 새터민 박○○은, 한국행을 부인하다가 남동생의 부인이 자백하고 석방되면서 한국행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본인과 동생, 오빠만이 요덕 혁명화구역에 수감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린아이들은 구호소로 보내지게 되었다.

⁹⁶ 새터민 심○○,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월 19일.

V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보호방안

1. 난민보호 차원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부각되면서,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난민차원의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기준은 1951년 난민협약서와 1967년 난민의정서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계층,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로 인해 자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거나, 자국의 보호를 요청하지 못하고 국적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즉 전쟁과 박해 등 정치적 이유로 외국으로 탈출한 경우 개인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난민으로 보호나 원조를 받게 되는 것이 기본 절차이다.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의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구는 난민보호활동을 주관하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HCR)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국제사면위원회(AI)와 국제적십자연맹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의 상황에 대해 주시하면서도, 중국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여 왔다. 1979년 개설된 중국내 북경사무소⁹⁷는 중국내 동남아 난민관련 보호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북한지역도 관심구역이기는 하나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7년 10월이래 북경사무소는 중·북 국경지역에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으며,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당국에 국경이동 북한주민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1999년 5월 조사단이 중국내 불법체류중인 북한주민중 난민의 존재 가능성을 밝혀내자, 중국정부는 공식

⁹⁷ UNHCR 북경사무소는 1979년 베트남 난민의 대량유입시, 난민 중 91%가 중국계인 점을 감안하여 개설되었다. 북경사무소는 중국, 몽고, 홍콩이 공식 관할 구역이다.

적으로 실태조사에 대해 경고하고 탈북자에 대한 UNHCR의 공식적 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HCR은 중국당국에 대해 대량탈북자 유입시 효율적인 국제적 대응을 위한 급변사태대책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⁹⁸ 국내언론들이 민간단체의 발언과 인터넷 자료를 인용하여 UNHCR이 탈북자중 난민이 존재함을 인정하였다고 보도하자, UNHCR은 “연합통신과 로이터의 기사를 실은 Refugees Daily는 UNHCR의 공식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⁹⁹을 들어 국내언론들의 보도가 오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UNHCR은 각국 현황자료에서 중국내 실태 설명시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나, 국내 언론이 이러한 사실을 부각시키자 중국당국의 입장을 감안하여 사실을 부인하였다.

북경사무소는 현재 베트남 난민들의 정착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9만 1천명의 난민에 대한 현지정착 지원사업은 1999년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¹⁰⁰ UNHCR은 베트남 난민들이 희망하는 경우 자발적인 귀환을 원칙으로 하고, 중국정부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중국내 정착을 원하는 베트남 난민의 경우 중국국적을 부여할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북경사무소는 베트남 난민문제의 최종 해결을 위해 중국정부와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콩특별행정구역내에도 귀환거부 난민과 심사결과 난민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1,562명이 아직도 체류하고 있다. 따라서 UNHCR은 현재 보호중인 베트남 난민들의 해결을 위해서도 중국정부와의 협조를 지속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며, 중

⁹⁸ <<http://www.unhcr.ch/world/asia/china.htm>>.

⁹⁹ <<http://www.unhcr.ch/refworld/cgi-bin/newssearch.pl>>, p. 2.

¹⁰⁰ 위의 글.

국정부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 탈북자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개입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1997년 난민보호 캠페인¹⁰¹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바 있는 국제사면위원회(AI)는 탈북자와 북한내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¹⁰² 구체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 별목공들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보고서는 발간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중국내 인권문제로 인해 중국당국이 AI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AI는 공식확인된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보호활동을 개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탈북자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호활동을 전개하지 못하여 왔던 실정이다. 그러나 AI는 난민의 처지에 있는 탈북자가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신상정보와 함께 보호를 요청할 경우 긴급탄원호소 등의 조치를 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¹⁰³ 1997년 8월 이송남의 경우 등 소수 개별사례에 대한 탄원요청을 진행한 바 있다. AI는 UNHCR의 난민보호활동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난민에 대한 국제보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AI는 UNHCR과 비교할 때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탈북자 인권침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나, 집단보다는 주로 구체적인 특정사례에 대해 탄원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04년에는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탈북자들의 발생상황과 이들의 강제송환이후의 처벌 및 중국 내에서의 인권침해 실태들을 부각하였다.¹⁰⁴

¹⁰¹ 1997년 3월부터 12월까지 난민보호캠페인을 실시하였다. AI, *Refugees: Human Rights have No Borders* (ACT 34/9/07), March 1997.

¹⁰² <<http://www.amnesty.org/ailib/aireport/ar99/asa24.ht>>.

¹⁰³ AI 런던 국제본부 동아시아 담당관과의 인터뷰, 1997년 6월.

¹⁰⁴ Amnesty International, *Starved of rights: Human rights and the food crisis in DPR Korea* <<http://www.reliefweb.int/w/rwb.nsf/vID/6F7C02087E4E>>.

기근을 포함 재해발생지역에서 이재민 구호를 담당하고 있는 적십자의 경우에도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제기구이다. 대한적십자사는 1999년 국내 민간단체의 탈북난민실태조사 발표를 근거로 국제적십자연맹에게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심각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방안 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제적십자연맹은 실제 현장 조사없이 상황을 평가할 수 없는 바 중국홍십자회와 공동으로 국경이동 북한주민에 대한 현황조사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맹은 국경이동 북한주민 문제와 관련 중국홍십자회 및 중국당국과 비공식 협의한 바 있으나 중국당국자들은 국경이동 북한주민 문제를 중국과 북한간 양자간의 사안으로 여기고 있으며, 중국홍십자회의 동의없이 중국에서 어떠한 일에도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제까지는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북한형법 제62조¹⁰⁵에 의거 정치적 박해 또는 처벌을 받을 위험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제법상 난민(refugee)의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1996년 말 이후 식량을 구하기 위해 도강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완화¹⁰⁶하여 왔고, 국경이동 북한주민 송환과정상 비인도적 처우도 상당부분 개선되었기 때문에 국경이동 북

3D5C49256E240017E506?OpenDocument>.

¹⁰⁵ 2004년 개정 북한형법 제62조는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나라로 도망치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¹⁰⁶ 2004년 개정 북한형법 제233조는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든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주민을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규정된 엄격한 의미의 난민(mandate refugee)으로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북한이 강제송환 이후 정치적 처벌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은 개별적인 정치적 박해의 위협은 줄었으나 이들은 송환이후 구조적 차별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며, 송환이후 조사 및 처벌의 위협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단순한 밀입국자 송환의 경우로 처리하여서는 곤란하다.¹⁰⁷ 즉,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은 북한 내의 극심한 식량난을 피해 탈출한 경우로 협약상의 위임난민(mandate refugee)의 지위를 부여받기는 어려우나, 국제사회의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¹⁰⁸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문타본(Vitit Muntarhorn)은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이 실제로 ‘현장 난민’(refugee sur place)의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관련당국과 국제사회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국경이동 자체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들이 현지체류국에서 단속될 경우 강제송환되며 중대한 처벌의 위협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현지체재중 난민이 된 자’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난민판정은 현지국의 주권사항이며 다만 현지국이 요청하거나 난민판정이 보호를 위해 필수적일 경우 UNHCR이 개입할 수 있다. 현재 불법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을 난민으로 규정하여 자유의사에 따른 정착허용과 보호를 추진하기에는 현

¹⁰⁷ Joel Charny, *Acts of Betrayal: The Challenge of Protecting North Koreans in China*, Refugee International, 2005. 4.; Hazel Smith, *The Plight of the North Koreans: North Koreans in China*, CEAS,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2005. 5.

¹⁰⁸ Human Rights Watch는 2002년 11월 보고서에서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이후 처벌을 감안하여 탈북자를 ‘현지체류중 난민이 된 경우’(Refugee Sur Place)로 규정하고 있다.

지국의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들의 지위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리만큼 국경이동 현상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강제송환이후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의 처벌 강도가 시기별, 개인의 북한 내 사회성분, 출신지역, 현지국내 체류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의 상황을 일반화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나, 강제송환될 경우 일부의 경우에는 여전히 정치범으로 규정되어 생명의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⁰⁹

이와 같이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보호국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난민’지위 부여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 받고자 시도하는 것이 ‘정치적 반역’으로 규정되며, ‘난민’지위 부여를 공식화 할 경우 대량의 불법국경이동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2. 불법이주자보호 차원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치적 난민으로 규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방안이 다양하게 강구되어야 한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에 따르면, 불법이주자(undocumented migrant)

¹⁰⁹ Amnesty International에 따르면, 북한의 당·정관료들은 일반주민들의 경우와 달리 탈북시 중형에 처하게 된다. Amnesty International, *Starved of rights: Human rights and the food crisis in DPR Korea* <<http://www.reliefweb.int/w/rwb.nsf/vID/6F7C02087E4E3D5C49256E240017E506?OpenDocument>>.

라 할지라도 생명권, 노예 및 강제노동금지,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금지, 사생활 보호권, 이동의 자유, 사상 및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이 생존의 방식으로 국경이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시정되어야 한다.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의 현실이 정치적 망명의 경우보다는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한 경우가 다수임을 인정하고, 중국 내 체류 희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보호개념을 도입할 경우 북한내 식량난이 완화될 경우 자발적인 귀환을 추진하는 것을 기조로 한다. 이는 일시적인 보호로 인해 이들 북한주민의 한국내 수용 요청이 둔화될 경우 북한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재외 불법국경이동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불법체류자에 준하는 최소한의 보호를 실시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이들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관련국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중국에 장기체류하면서 사실상의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중국정부는 중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및 이들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게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북한여성의 경우는 본인들의 중국체류자체가 불법이며 강제송환의 위협으로 인해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¹¹⁰ 따라서 특별한 일시구조절차 등을 통해 중국인과 결혼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여성과 어린이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여

¹¹⁰ 광대중,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05년 6월 24일.

성과 중국인 남성사이에 태어난 어린이들의 경우 취학을 위해서는 법적 구조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조치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¹¹¹

불법 국경이동 북한주민 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정부와 NGO는 각각 능력상의 한계를 갖고 있는 바, 상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련 국제기구 및 인권단체들 (UNHCR, UNHCHR, AI, MSF 등)에게 개별적인 인권침해의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및 자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관심 및 관련국에 대한 시정추구를 유도하여야 한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중국의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탈북자의 난민지위 판정에 필요한 객관적 기준 제정을 위한 중국의 공식적인 입법 또는 행정 근거조항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중국은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이 북경 주재 외국 대사관에 진입하여 국제화된 사례에 대해서만 국제적 관례를 적용하여 제3국으로 추방하고 대다수 중국 체류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체포 및 북한 송환의 조치를 취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바,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를 활용하여 이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매년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에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를 통해 난민차원의 접근뿐만 아니라 불법이주민 차원의 실질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불법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¹¹¹ Hazel Smith, *The Plight of the North Koreans: North Koreans in China*. CEAS,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2005. 5.

이들의 불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에 대한 구제조치들을 담당할 수 있는 현지 비정부기구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국 내 다른 형태의 인신매매 문제와 연계하여 문제를 풀기위한 중국당국의 조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 내에서 북한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의 수요를 갖고 있는 비공식부문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할 것이며, 이들의 성을 매입하는 남성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내 성매매특별법의 단속을 피해 해외로 매춘여행을 떠나는 한국남성들이 국경이동 북한여성들의 성을 매매하는 수요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중국 내 성산업에서 북한여성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법국경이동 북한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국간의 정치적 협상이 필요하나,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인도적·현실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 내 불법이주자들의 인권보호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들을 시도하고, 여기에 북한주민들의 문제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인간안보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 내 불법이주자들의 논의가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민간단체, 관련학자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기구의회의로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간 논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VI

결론

본 연구는 북한주민들의 탈북현상을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국경이동’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보았다. 이를 통해서 북한주민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게 되는 내부적 요인과 이들의 불법 국경이동을 유인하는 외부적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식량난 이후 중국과의 국경선이 북한주민의 생명을 유지하는 주요한 통로로 작용하여 왔으나,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등으로 식량난이 다소 완화된 상황에서도 중국으로의 ‘국경이동’은 북한주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국경이동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국경통행허가증, 여권 발급 등이 제도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경을 넘나들어 왔다.

기존의 연구들은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제 북한주민들의 국경이동의 상황 및 환경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여 왔다. 물론 북한주민들의 국경이동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한 중국당국과 북한당국의 단속과 처벌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인권적 차원의 접근이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탈북’보다는 ‘국경이동’이라는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수요와 기대에 의해 ‘국경을 넘나드는 행위’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실제 북한주민의 기존 ‘국경이동’의 규모가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식량난으로 인해 대규모의 국경이동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또한 이러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에 대한 관리가 관련국에 의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상황을 악화시킨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북한당국이 북한주민들의 국경이동 요구 및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러한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처벌조치를 완화하였거나, 중국당국의 국경이동 북한주민에 대한 현실적인 처리

조치 등이 마련되었다면 양국의 정치적 및 사회적 부담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중국사회에서 필요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수요, 결혼상대자로서 북한여성에 대한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이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현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유지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까지 북한주민의 국경이동을 단순히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온 것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실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에는 식량난을 피해 가족들의 생존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경제적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경이동에 대한 관련국의 단속과 처벌과정에서 정치적 요소가 더욱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한국, 일본 등 제3의 정착지를 찾아 재이동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침해가 유발되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국경이동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등 관련당사국들의 실제적인 보호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이주자문제의 차원에서 북한주민의 문제도 조명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경이동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북한 내에서 주민들의 국경이동을 촉진시키는 배출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빈곤퇴치 및 인권보장 조치와 함께, 이들의 국경이동을 과도하게 끌어내는 외부의 유인요인들에 대한 대책들도 같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불법 국경이동으로 인한 동아시아 지역 내 정치적·사회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이주자들의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 내 국경관리를 위한 관련국들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김구섭·김광식. 『북한의 대량난민 발생 가능성과 장단기 정책방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4.
- 김태현·노치영. 『재중(在中)북한이탈 여성들의 삶: 13인의 탈북체험 (Lived Experiences)을 중심으로』. 서울: 하우, 2003.
- 북한인권정보센터. 『재외탈북자 및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04.
- 원재천 편. 『새로운 차원에 접어든 북한난민 문제의 해결과 접근』. 서울: 한국 해양전략연구소, 2003.
- 윤여상. 『제3의 동포 재외탈북자』. 서울: 열린포럼 21, 2001.
- 이금순. 『북한 탈출주민 대책연구: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_____. 『탈북주민의 국내 정착 방안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이영선 외.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탈북자의 삶』. 서울: 오름, 1996.
- 외무부. 『난민문제 및 인도적 구호활동』. 난민문제에 관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워크숍자료. 서울: 외무부, 1995.
- _____. 『재외공관에서의 귀순 망명요청자에 대한 처리지침 (2차 개정)』. 서울: 외무부, 1996.
- 좋은벗들.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중국 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 북한 '식량난민' 실태조사』. 서울: 정토출판, 1999.
- _____. 『아시아 난민의 실태와 NGO의 역할』. 서울 NGO세계대회 인권분야 워크숍 논문집.
- _____. 『북한식량난과 북한인권』. 서울: 정토출판, 2004.
- 주독대사관. 『1989년 동독 탈출난민 처리 및 협상과정』. 1994.
- _____. 『동독이주·탈출자 관련 서독정부 법적 대응-「緊急收容法」 및 「施行令」 제정관련』. 1994.
- 통일원. 『북한동포의 국내입국관련 법률적 문제점과 보완방향 검토』. 1994.

_____. 『탈북자의 법적 지위 관련 대책(안)』. 1994.

_____. 『탈북귀순자 처리 종합대책(안)』. 1996. 3.

Aleinikoff, T. Alexander · Klusmeyer, Douglas, eds., *From Migrants to Citizens* (Washington, D. 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00)

Barrett, D. E. · Frank, D. A. *The Effect of Undernutrition on Children's Behavior*. New York: Gordon and Breach, 1987.

Caplan, Nathan, John K. Whitmore, and Marcella H. Choy. *The Boat People and Achievement in America: A Study of Family Life, Hard Work, and Cultural Valu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89.

Cole, Ellen, Espin, Olivia M., Rothblum, Esther D. *Refugee Women and Their Mental Health: Shattered Societies, Shattered Lives*. New York: Haworth Press, 1992.

Cohen, Roberta · Deng, Francis M. *Masses in Flight: The Global Crisis of Internal Displacement*.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88.

European Union/UNICEF/World Food Programme. *Nutrition surve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ew York: UNICEF, 1998.

IHRLK. *A Report on the North Korean Refugees*. Seoul: International Human Rights League of Korea, 1994.

IOM · ICMPD, *New Challenges for Migration Poli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Vienna: ICMPD Press, 2004.

Lee, C. J. *China's Korean Minority: the Politics of Ethnic Education*. Boulder. CO: Westview Press, 1986.

UNHCR. *Collection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Concerning Refugees*. Geneva: UNHCR, 1990.

_____. *Handbook on Procedure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under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Geneva: UNHCR, 1992.

- _____.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Protection*. Geneva: UNHCR, 1994.
- _____. *Refugee Children: Guidelines on Protection and Care*. Geneva: UNHCR, 1994.
- _____. *UNHCR Policy on Refugee Women*. Geneva: UNHCR, 1994.
- _____. *Refugees and Others of Concern to UNHCR: 1988 Statistical Overview*. Geneva: UNHCR, 1999.

2. 논 문

- 곽해룡.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 신 이산가족 현상의 발생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000년 상반기호. 통권 제33호.
-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내 북한이탈주민 보호관리방안 연구.” 『통일대비 경기도의 역할과 과제』. 1998.
- 김명기. “재외탈북자는 누가 보호해야 하는가-재외탈북자에 대한 법적 보호 의무.” 북한인권시민연합 제1회 학술회의 자료집. 1997.
- 김상균. “점검과 지향: 우리의 수용태세와 장기방안.” 『북한 탈출동포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94.
- 김승만. “북한탈출 귀순동포와 쿠버난민.” 『월간북한』, 1994. 10.
- 김용범. “동해 상 고대 한·일 해양 루트를 통한 북한주민 대거탈북 예측.” 『문화정책논총』.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제8집. 1996.
- 김일수. “거주이전의 자유와 북한의 국외탈출죄.” 북한인권시민연합 제8회 학술토론회 자료, 1998.
- 신영호. “대량탈북사태와 사법적 대응.” 『법제연구』. 제12호.
- 오경섭. 「북한인권 침해의 구조적 실태에 대한 연구: 정치범수용소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 윤여상. “탈북자 실태와 지원체계: 중국지역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
- _____. “북한이탈주민 급증에 대한 정책대안.” 『국가전략』. 제9권 1호, 2003.
- 윤인진. “통일을 대비한 북한이탈동포 대책.” 북한이탈동포 대책 공청회 발표

- 자료, 1999.
- 이병웅. 『한반도 난민의 인도적 보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이신화. “‘환경난민’이란 무엇인가?: 대량탈북 위기에의 조기경보.”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1997.
- 이원웅. “재외탈북자의 인권보호 방안.” 북한인권시민연합 제5회 학술토론회, 1998.
- 이재승. “탈북동포, 왜 돌아야 하나: 러, 북한 벌목공의 참상 이대로 둘 수 없다.” 『자유공론』. 1994. 4.
- _____. “난민탈출로 시작되는 북한붕괴.” 『자유공론』. 1994. 10.
- 이종훈. “북한 탈출동포의 보호문제.” 국회입법조사분석실. 『현안분석』. 제 80호.
- 장창준. “북한인권법’과 이북인권상황의 실제.” 한국민권연구소, 2004.
- 제성호. “북한 탈출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안.” 『북한연구』. 1994년 가을.
- 조서영. 『재외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NGOs 활동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7.
- Dyson, T. “On the demography of South Asian famines.” part I. *Population Studies* 1991.
- Gallagher, Dennis. “The Evolution of the International Refugee System.”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23, Fall 1989.
- Katona-Apte, J. · Mokdad, A. “Malnutrition of childr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North Korea.” *Journal of Nutrition*. 1998.
- Natsios, Andrew. “The Politics of Famine in North Korea.”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Special Report, August 2, 1999.
- Robinson, W Courtland. Lee, Myung Ken. Hill, Kenneth. Burnham, Gilbert M. “Mortality in North Korean Migrant Households: a Retrospective Study.” *Lancet*. Vol. 354, No. 9175, 24 July, 1999.
- Sasae, Ken. “The Challenge of Refugees.”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UN’s 50th Anniversary on “the Rise of East Asia and the UN,” Seoul, 1995.

- UNHCR. "UNHCR Country Profiles-China."
 <<http://www.unhcr.ch/world/asia/china.htm>>.
- UNHCR. "UNHCR NewsNet: North Korean."
 <<http://www.unhcr.ch/refworld/egi-bin/newssearch.pl>>.
- Weingarhner, Erich. "Perceptions of Human Insecurity Assessing Threat and Hop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anadian Consortium on Human Security, 2004.
- Young, H. · Jaspars, S. "Nutrition, Disease and Death in times of Famine." *Disasters*. 1997.

3. 기타자료

- Amnesty International.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Violations behind Closed Doors (ASA 24/12/95). December 1995.
- _____. Russian Federation/ DPRK: Refoulement of Lee Yen Sen/ Fear of Safety in North Korea (EUR 46/06/96). February 1996.
- _____. North Korean Shot Dead at Russian Border by North Korean Officials (EUR 46/06/96). June 1996.
- _____.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ussian Federation: Pursuit, Intimidation and Abuse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Workers (ASA 24/06/96). September 1996.
- _____. (North Korea) Public Executions: Converging Testimonies (ASA 24/01/97). January 1997.
- _____. Refugees: Human Rights have No Borders (ACT 34/9/07). March 1997.
- _____. The Fate of Those Who Flee: the Case of Li Song Nam (ASA 24/11/97). October 1997.
- _____. General Secretary Kim Jong Il Should Consider Human Rights Reform (ASA 24/12/97). October 1997.

- _____. 1999 Amnesty International Annual Report. London: AI, 1999.
- _____. China: No Improvement in Human Rights (ASA 17/14/99).
December 1999.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0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현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향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변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변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적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Ⅰ)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김광억 외	공저	4,000원
2004-26	중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억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Ⅱ)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 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